

# INVENTION & PATENT

2011 September

09

Special Issue  
[포커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그 의미와 대응



INVENTION & PATENT \_ Vol . 422



# Contents

## IP Report

14	IP리포트	영국의 특허소송
20	특허확대경	발명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등록된 특허권 공유지분에 대한 민사상 말소청구의 허용 여부
26	시선집중	연예인 이윤미 쇼핑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30	IP노트	IP 범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 IP Column

36	IP 이슈	우리나라는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40	Zoom in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그 의미와 대응
42	해외 IP연수 보고	씨애틀에서 만난 여름보다 뜨거운 IP 연수의 현장
50	WIPO 여름학교를 다녀와서	WIPO 여름학교 참가 소감문
57	우수특허기술 사업화 활용 사례	(주)엘더스T&L

## IP Information



62	상표의 재발견	상표에도 '스테디셀러'가 있다
64	세계는 지금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68	KIPO NEWS	특허청 소식
71	KIPA NEWS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74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76	건강하게 삽시다	해독요법과 해독다이어트
80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지식재산권 용어설명
81	특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82	신간안내	창업국가
83	문화산책	셜록홈즈,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84	발명 365	청진기, 체인
85	독자마당	QUIZ

# 발명교육 콘텐츠 공모전

2011년 대한민국

## 공모주제

### 발명교육

e-발명· 지식재산교육의 결과물 또는 교육 목적의 성과물

ex) 발명신문, 발명노트, 발명작품집, 발명지도사례, e-러닝 교육수기, e-러닝 학습방법 및 성공사례, 교육 오류사례 등

### 발명문화 창작

e-발명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창작된 교육용 창작물

ex) 스마트폰앱, 발명활동 동영상, UCC, 발명표어, 발명송, 발명포스터, 논문, 보고서, e-러닝용 콘텐츠 등

##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법인 포함, 팀구성시 3인이내에 한함)

## 공모일정 및 접수방법

- 작품접수 : 2011. 9. 1(목) ~ 9. 30(금) (과제수 : 제한 없음)
- 접수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http://www.ipacademy.net>) 및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www.kipa.org>)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교육기획팀 02-3459-2788, 2769

## 작품 형태

작품 형태	작품의 형식	비고
사례/수기 등 텍스트물	일형태는 한글, MS-WORD 또는 PDF가 가능하며, 편집기준 (한글)은 A4용지, 12pt, 줄간격 160%, 여백(상하 15, 좌우 20)을 맞추어야 함.	2페이지 이상 인정
동영상UCC, 애니메이션	파일의 형태는 avi, wmv 및 swf가 가능하며 크기는 최소 640×480 해상도 이상을 충족해야 함.	5분내외
디지털음원	파일의 형태는 avi, mp3, wmv 및 wma형태가 가능하며 가사는 한글파일로 제출해야 함(개사하여 제출할 경우, 작곡자의 사용 승인허가서 반드시 첨부)	3분내외
그래픽물	3,000픽셀이상의 jpg형태를 충족해야 함.	포스터 등
스마트폰 앱	스마트폰 등 학습기기용 응용프로그램	제한없음

## 시상계획

명칭	상격	시상 작품수	시상 내용
대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2(부문별 1개)	상장 및 상금 100만원
금상	특허청장상	4(부문별 2개)	상장 및 상금 70만원
은상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	6(부문별 3개)	상장 및 상금 50만원
동상	후원기관장상	16(부문별 8개)	상장 및 상금 30만원
장려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80	상장 및 5만원상품권
특별상	특허청장상	1(우수지도자)	감사패 및 상금 100만원

주최·주관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발명진흥회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과천과학관,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주)동아시아인스

# 2011 우수상표권 공모전 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우수상표를 발굴·시상하고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하여 「2011 우수상표권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특허청에 상표를 신규 등록한 자 또는 기업 (단, 존속기간갱신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제외)

## ■ 접수기간

- 2011. 8. 11(목) ~ 9. 16(금) 18:00까지

##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신청서 : 상표·디자인권展([www.trademark-design.org](http://www.trademark-design.org)) → 「'11우수상표권 공모전」 신청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http://www.kipa.org)) → 「'11우수상표권 공모전」신청
  - 출품 1점당 1부의 온라인 접수, 권리자 당 3점 이내 신청가능

## ■ 시상식

- 2011. 12. 1(목) 11:00, COEX 그랜드컨퍼런스룸(4층)

## ■ 수상 브랜드 특전

- '11 상표·디자인권展에 무료전시 [ '11. 12. 1(목) ~ 12. 4(일)]
- 전용홈페이지([www.trademark-design.org](http://www.trademark-design.org))의 홍보관내 상설전시
- 언론매체 홍보
- '2011 Best Trademark Right' 로고 사용권 부여

##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Tel. 02-3459-2793, 2845  
E-mail. [lmh0806@kipa.org](mailto:lmh0806@kipa.org)

\* 2011 상표디자인권전은 서울국제전시회 및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과 동시 개최됩니다.





# GERMANY

## 유럽 진출의 교두보 '11 독일 국제아이디어·발명· 신제품전시회 모집안내

### ■ 전시명

• 2011 독일 국제아이디어·발명·신제품전시회  
iENA2011(International Trade Fair Exhibition "Ideas-Inventions-New Products") ([www.iena.de](http://www.iena.de))

■ 기 간 : '11. 10. 27(목) ~ 30(일) \* 부스설치 : 10. 26(화)

■ 장 소 : 뉘른베르크 무역전시센터 Hall12 (Nuremberg Trade Fair Centre, Hall 12)

■ 규 모 : '10년 37개국 800여 점

### ■ 특 징

• 독일 최대의 발명 관련 발명전시회  
• 60년 전통 및 라이선싱·바이어 상담에 특화

■ 주 최 : AFAG Messen und Ausstellungen Gmb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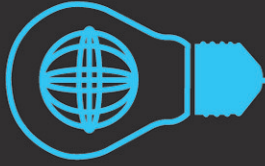
### ■ 전시형태

부스크기	기본 제공 사항
4㎡ (2m×2m), 6㎡ (3m×2m)	등록비, 카탈로그 게재비용, 전기, 부스설명판, 테이블, 의자 1개, 카펫

■ 시상제도 : 분야별 금, 은, 동메달 및 특별상 등  
• 심사는 주최측 심사위원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됨.

### ■ 출품지원금 국고지원 및 혜택

• 개인 및 중소기업자의 최소부스로, 번역비, 통역비 항목에 한해 발명품 1건 당 최대 2,000,000원 이내 환급 (국고보조금, 정산 등)  
• 발명의 날 포상 신청 시 본 전시회 수상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잔액은 참가단 귀국 후 정산하여 환불



# 2011 서울국제발명전시회

## 출품 신청 안내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매년 30개국 이상의 세계 최신의 발명품이 전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발명·신제품 전문 전시회입니다.

발명품·신제품 홍보 및 기술 거래의 場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여러분의 발명품으로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하십시오.

###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1 서울국제발명전시회  
(Seoul International Invention Fair 2011)
- 주최/주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기간 : 2011. 12. 1(목) - 12. 4(일)
- 장소 : 코엑스 Hall A
- 규모 : 36개국 651점 (2010년)

###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1. 8. 2(화) - 10. 20(목)
- 신청서 : [www.siif.org](http://www.siif.org) 또는 [www.kipa.org](http://www.kipa.org) (사업공고 또는 POPUP-ZONE참조)다운로드
- 제출서류 : 출품신청서 및 구비서류 (출품신청서 참조)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직접방문 접수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 시상내역

- 본 상 : 대상, 준대상, 금·은·동 (상패 또는 메달 및 상장)
  - 특별 상 : 후원기관, 해외유관기관 제공
- ※ 현지심사에 의한 상격결정 및 12. 3(토) 시상식 개최예정

### 신청서 제출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 문의처 : 02-2-3459-2795, 2796/ [siif@kipa.org](mailto:siif@kipa.org)
- 홈페이지 : [www.siif.org](http://www.siif.org)

"2011 글로벌IP 전략인재 양성과정"

# 『미국 특허 라이선스와 협상』 과정 신청 안내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해외출원 및 분쟁 등이 예상되는 기업의 특허인력을 대상으로 국제특허업무 능력 및 분쟁역량 향상을 위하여 "글로벌IP 전략인재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교육내용 및 특징**

- 미국 특허 라이선스와 협상에 대하여 이론 및 실무중심으로 강의운영
- 실무경험이 풍부한 해외 로펌 전문가의 초청강연을 통한 해외 특허 실무경험 공유
- 강의는 우리말과 영어를 병행하고 영어 강의시 질의응답 또는 우리말 Summary 강의

● **강 사**

- 특허출원 및 소송분야에서 미국 최고 수준의 특허전문 Finnegan & Henderson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 **교육일정**

- 09월 21일(수)~ 09월 23일(금)

● **교육비**

- 47만원
- 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교육비의 80% 지원(\*94,000원 선납부)

● **모집정원**

- 25명 내외 (선착순 마감)

● **신청자격**

- 기업 소속 지식재산 관련 담당자

● **교육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 대회의실

● **교육일정**

구분	교육과정(안)	교육일정(안)	교육진행	교육비 지원내용
미국특허실무 완전정복과정	특허법 기초 및 특허요건	07. 27-07. 29 (3일간)	교육완료	-교육비 : 각 과정당 47만원 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교육비의 80%지원  - 추후 상세안내
	미국 특허출원/OA대응/특허소송 기초	08. 17-08. 19 (3일간)	교육완료	
	미국 특허소송 및 제도(심화)	08. 31-09. 02 (3일간)	교육완료	
	<b>특허 라이선스와 협상</b>	<b>09. 21-09. 23 (3일간)</b>	<b>접수중</b>	
아시아수출기업 특허전략과정	중국 특허출원 및 상표전략	10. 24-10. 25 (2일간)	접수예정	
	일본 특허출원 및 상표전략	11. 21-11. 22 (3일간)	접수예정	

\* 상기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2011.08.29(월) ~ 09.16(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pid@kipa.org) 및 FAX(02-3459-2859)접수
- 문 의 처: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Tel: 02-3459-2806, 2852)
- ※ 세부 커리큘럼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ipa.org) 참조



## 2011년 하반기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이란?

- 기술력은 우수하나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공인된 기술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이 이를 투자심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 신청자격

- 창업투자회사\* 및 동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대상으로 검토 중인 중소기업\*\*의 공동신청
- \* 신청대상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별도 자격제한은 없으며, 기타 국내 금융기관 및 엔젤투자조합을 포함함
-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기술 보유 또는 특허기술 사업화 진행 중인 중소기업임

### ■ 지원내용

- 특허청 지정 9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창업투자회사가 대상기업의 기술 검토를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맞춤형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기술평가보고서를 제공
- 지정 평가기관에서의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VAT 별도)

###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접수기간 : 2011. 8. 19부터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평가계획서 및 평가비용 견적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사업공고 첨부양식)를 작성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출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주한중 전문위원(Tel: 02-3459-2945, E-mail: hjju@kipa.org)

※ 상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사업공고란 참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기술유출 관련 범죄 292건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 피해 추정액 4조 2,156억 원

# 아직까지 분쟁 중?

이제 다툴 필요 없습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www.tradeseecret.or.kr](http://www.tradeseecret.or.kr)

##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는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유출, 도용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그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의 입증**을 도와주는 서비스

## 특장점

- 한국특허정보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서비스**
- 원본 제출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함으로써 증명과정에서 **비밀정보의 유출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
- 워드,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전자파일을 지원**
- 인터넷만 연결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 가능**

## 활용대상

아이디어 자료, 연구노트, 설계도면, 거래실적, 재무자료, 마케팅 자료, 고객정보, 계약서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 노하우, 조리법 등 **원본 증명이 필요한 모든 전자문서**



2011 제9회

# 여성발명경진대회



꿈꾸는 여성들의 톡톡 튀는 발명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 **참가자격**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
- ▶ **대회부문** : 일반부문, 학생부문, 장애인부문, 과학부문

### ▶ 출품대상

- 신청일 현재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발명 및 고안, 디자인 등(출원 중인 경우는 가능)
- 1인 1건에 한하고, 공동발명의 경우는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
- 실용신안의 경우는 등록유지결정을 받기전의 고안에 한함
- 발명관련기관에서 개최한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제외

- ▶ **접수기간** : 2011. 7. 25(월) ~ 9. 15(목)

### ▶ 접수방법



협회 홈페이지([www.inventor.or.kr](http://www.inventor.or.kr))  
 공지사향에서 소정양식을 내려 받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wia01@inventor.or.kr](mailto:kwia01@inventor.or.kr))이나 우편 또는 팩스, 방문접수  
 ※ 우편 접수 경우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011년 9월 15일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주최/주관기관은 수상작에 대한 간행물을 발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 시상계획

- 대통령상(1명) 4백만원, 국무총리상(1명) 3백만원
- 금상(4명) 각 2백만원, 은상(6명) 각 1백만원
- 동상(20명) 상패, 부상 / 장려상(20명) 상장, 부상
- 과학부문 최우수상(1명) 2백만원, 장애인부문 최우수상(1명) 2백만원
- ※ 시상인원은 참가 건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도 있음

- ▶ **시상식(예정)** : 2011년 11월 3일(목), 포스틸타워 3층 이벤트홀

문의처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 ☎ 02-538-2710, 팩스 02-538-2714

주최 :  특허청  주관 : 한국여성발명협회

후원(예정) :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한국특허정보원 등



# 219개국 해외상표등록가이드



변리사 김윤배, 변호사 김선령 (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 Kims and Lees) 공저

세계 219개국의 상표관련 제도를 집약한 해외출원 안내서로서, 전세계 9개 권역별 상표제도의 특징과 함께 개별국가의 상표 출원·등록·심판제도를 간결하게 해설하고 상표에 관한 주요 조약의 현황, 해외상표출원과 사후관리, 마드리드 방식에 의한 국제상표출원 등 해외상표제도의 기본 개요와 함께 각 권역별 상표출원 전략이 수록되어 있다.

“ 본문 p119에서 발췌 ”

양장 컬러판으로 준비한 본서는 상표제도 뿐만 아니라 국가별 개요를 원색지도와 함께 해설하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의 종합적 상표전략 수립과 해외 상표출원 및 등록관리의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내용

- 제 1편 상표제도 및 상표출원실무해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절차 포함)
- 제 2편 ① 글로벌 상표제도 개요  
② 전세계 9개 권역(서유럽,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카리브해, 남미)의 권역별 상표제도 개요  
③ 219개국의 국가 현황 및 상표출원 절차
- 제 3편 ① 상표 관련 주요 조약 현황 및 해설  
② 해외 상표 출원, 등록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용어 해설

“ 본문 p74에서 발췌 ”

### Madrid Agreement / Protocol



## 27. 영국 United Kingdom



- 1. 면적: 244,820km<sup>2</sup>
- 2. 인구: 61,113,205명(2009년)
- 8. GDP: 26,740억 달러, 1인당 GDP 45,574달러(2008년)

(78.2)

- 9. 주요 산업
  - 1)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주의로 발전 시켜온 영국의 경제가 20C 후반부터 장기간 경제침체를 겪고 있다.
  - 2) 제철, 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화학, 섬유, 피혁
- 10. 국제기구 가입: UN, OECD, EU, The Commonwealth
- 11. 한국과 관계
  - 1) 정치: 1949년 수교(남북 동시 수교)
  - 2) 경제: 2008년 對韓 수출 36.4억 달러(주류, 의약품, 펌프, 합성수지)  
2008년 對韓 수입 68.7억 달러(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 3) 기술 이전: 공업소유권 보호 협정



### 상표제도 개요

- 1. 상표법: 1994. 10. 31 개정
- 2. 조약: Paris Convention, WIPO, Nice Agreement, Madrid Protocol, TRIPS, CTM, TLT
- 3. 상표권의 종류: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 4. 등록되는 상표: 기호, 문자, 숫자, 도형, 입체, 동작, 소리 등
- 5. 상품분류: NICE 분류 채택
- 6. 다류출원: 다류출원 가능
- 7. 출원 및 심사절차
  - 1) 출원
    - (1) 상표건본
    - (2) 출원상표의 사용여부에 대한 기재
  - 2) 심사절차
    - (1) 심사-광고-등록

## ▶문의 및 구입처◀

◆ 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Kims and Lees)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8층  
Tel. 733-9991, kimsandlees@kimsandlees.com

◆집문당 (02-743-3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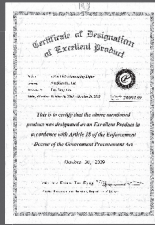
〈컬러 양장판 500면, 값 150,000원〉

## 아름다운 빛의 근원 SLIM LINE 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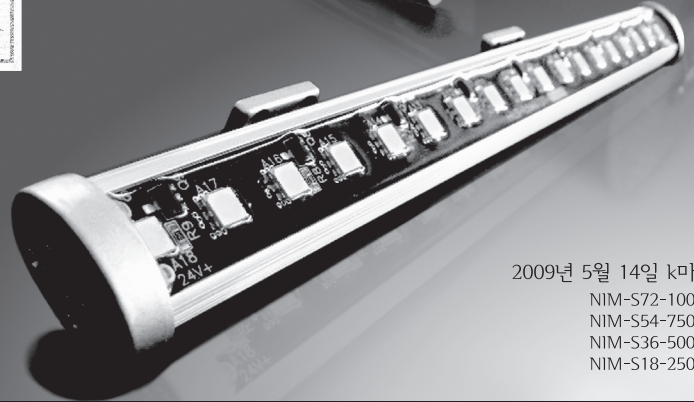
• 설치시공사례



2009년 6월1일 CE마크 선정



1. SMD TYPE LED
2. SLIM & SIMPLE
3. 다양한 각도 조정의 브라켓



2009년 5월 14일 k마크 취득  
 NIM-S72-1000-F/WH  
 NIM-S54-750-F/WH  
 NIM-S36-500-F/WH  
 NIM-S18-250-F/WH

2009년 4월 29일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 LED 조명등(NIM-CS1.5W-A)
- LED 조명등(NIM-CS6W-A)



0.24W SMD TYPE LED 소자  
 R·G·B 3COLOR in 1 chip

어둠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눈동자

## LED CLUSTER

• 설치시공사례

대전부리공원



남지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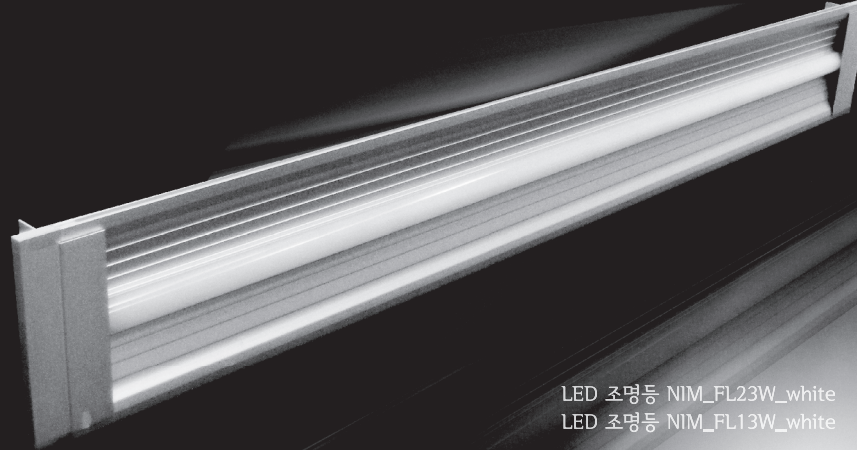
## Insertion LED Illuminating Light

• 설치시공사례



일반 형광등은 자외선이 발생하나 매입형 LED등기구에서는 자외선을 방출하지 않으며 연간 30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 중 녹색기술개발 성장동력화에 발맞춘 친환경 제품이다.

## ECO FRIEND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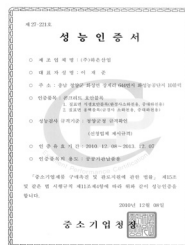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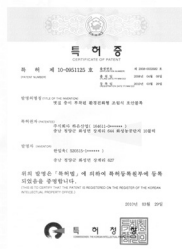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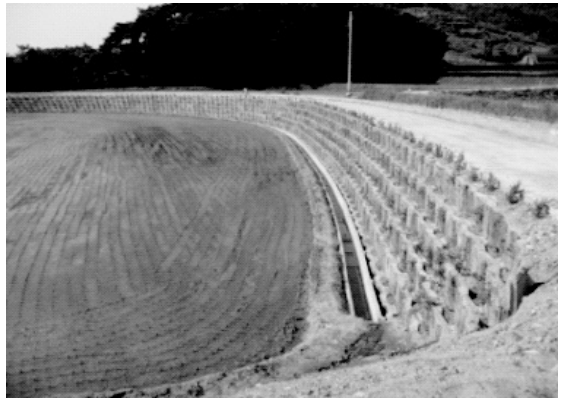
LED 조명등 NIM\_FL23W\_white  
 LED 조명등 NIM\_FL13W\_white

호안. 축대. 옹벽을 자연환경으로.....

주식회사 하은 산업의 황토색  
벗짚표면 호안, 축대, 옹벽은  
대한민국 조달 우수물품입니다.

## 보유기술및 인증

- ◎ 한국산업규격(KS) 표지 인증 (KS F 4010)
- ◎ QMS 인증(DIN EN ISO 9001 인증)
- ◎ EMS 인증(DIN EN ISO 14001 인증)
- ◎ 신기술 인증 (NET)
- ◎ 유망중소기업지정 (충남도지사)
- ◎ 환경표지인증(호안블록)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청장)
- ◎ 건 마크 인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장)
- ◎ K 마크 인증 (한국산업기술원장)
- ◎ 성능 인증 (중소기업청장)
- ◎ 대한민국 ESH가치경영대상(조달청장)
- ◎ 청양군 최고기업인상 수상(청양군수)
- ◎ 우수조달품목 지정(조달청장)
- ◎ 발명특허: 벗짚층이 부착된 환경친화형  
조립식 호안블록외 11건
- ◎ 실용신안: 벗짚층이 부착된 호안블록  
(축대블록)외 9건
- ◎ 디자인등록: 식생호안블록외 14건
- ◎ 해외디자인 등록: 가로수보호의자외 3건



주식회사 하은산업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644화성산업단지 10블럭  
TEL041)942-8523~4 FAX041)942-8525

http: www.juhaeun.co.kr E-mail: juhaeun@hanmir.com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즐거운 발명세상으로 모두 모여라!

## ‘간다! 천하무적 발명단!’

‘창의력 쓱쓱 상상력 팡팡!’  
세상은 창의와 상상을 필요로 한다!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친구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5분!  
TV앞으로 모여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간: 5월 3일 ~ 9월 13일, 총 20회)



톡톡! 생방송 보니하니

발명교육센터([iec.kipo.go.kr](http://iec.kipo.go.kr)) 또는 사이버아카데미([www.ipacademy.net](http://www.ipacademy.net)) e-발명배움터를 통해  
5월 19일 부터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좌충우돌 발명교실(5편) ◆ 간다! 천하무적 발명단(20편)

**IP**

**Report**

# 영국의 특허소송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교역국 중 하나인 영국의 특허소송 체계, 특허법원 및 소송절차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발명가와 기업이 영국 및 유럽에서의 특허 분쟁 관련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임 호 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서기관

## I. 서론

## II. 특허소송

## III. 영국의 특허소송

1. 영국의 사법 제도
2. 특허소송 전담 법원
3. 특허소송 체계
4. 특허 무효심판 및 무효 소송
5. 특허 불침해 선언 청구 제도
6. 특허 침해 소송
7. 영국의 지적권 소송 건수(통계)
8. 영국의 특허소송 대리인

## IV. 우리나라의 특허소송

## V. 결어

## I. 서론

스마트폰을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 기술은 기술개발 사이클이 매우 짧아지면서 특허권의 경쟁력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연구개발 결과를 특허화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특허를 받게 되면 관련 기술이 공개되므로<sup>1)</sup> 제3자가 특허기술을 일부 변형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특허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특허분쟁 대응 방식 중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은 상호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하는 때도 있다. 이때 특허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 및 처리절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한 국가에만 특허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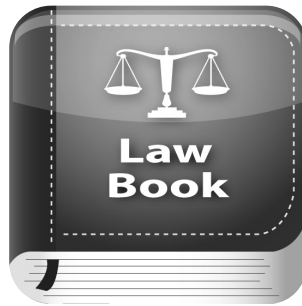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출원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분쟁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므로, 특허권자는 세계 주요 국가의 특허 분쟁 제도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교역국 중 하나인 영국의 특허소송 제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발명가와 기업이 영국 및 유럽에서의 특허 분쟁 관련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특허소송

광의의 특허소송이란 특허권에 관한 분쟁 뿐만 아니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체의 행정·민사 소송을 말한다. 용어만을 생각하면 특허소송보다는 지식재산소송이라고 부르는게 더 적합할 듯 하나, 실무적으로는 특허소송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도 특별히 권리별로 구분하여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소송 대신 특허소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한편, 특허소송의 종류는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① 발명자가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이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일종의

행정소송), ② 등록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다투는 소송, ③ 특허권자와 제3자가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다투면서 손해배상 또는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으로 구분된다. 기타 특허권의 라이선스 관련소송, 특허권의 기간 연장이나 정정에 관한 소송도 있다.



## III. 영국의 특허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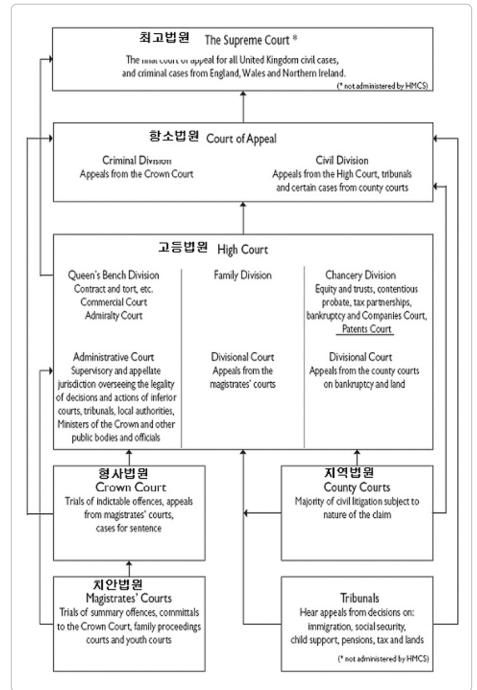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영국의 사법제도 및 특허소송 체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영국의 사법 제도

영국 법원은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 -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 - 고등법원(제1심, The High Court) - 기타 법원체계를 이루고 있다.<sup>2)</sup>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제1심 법원은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이다. 치안법원은 웨일즈와 잉글랜드 지역

에 약 3만개가 있으며, 사건은 3명의 판사에 의해 심리된다. 취급하는 사건의 약 95%는 치안법원 단계에서 종결된다.



〈영국의 법원 조직〉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다른 법원은 형사법원(Crown Court)<sup>3)</sup>이다. 웨일즈와 잉글랜드 지역에 77개가 있으며 강도 등 중대범죄에 관한 소송, 그리

1) 각종 특허청은 특허를 부여한 발명에 대해 공고를 하는데, 이때 특허권자가 제출한 발명기술 명세서를 공개한다.  
 2) "Senior Courts Act 1981" 제1조 : The Senior Courts  
 (1) The [Senior Courts] of England and Wales shall consist of the Court of Appeal, the High Court of Justice and the Crown Court, each having such jurisdiction as is conferred on it by or under this or any other Act.  
 3) "Senior Courts Act 1981" 제45조 : General jurisdiction of Crown Court

고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 결정에 대한 항소를 담당한다.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제1심 법원은 지역법원(County Court)이다. 21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사, 파산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사소송 제1심을 처리한다. 한편, 중요한 제1심 민사사건, 그리고 일부 민·형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이 고등법원(High Court)이다. 이 법원은 런던에 위치하고 있고 여왕좌부(Queen's Bench Division), 가사부(Family Division), 형 평 법 부 (Chancery Division)<sup>4)</sup>로 구성된다. 고등법원의 형평법부에는 특별법원으로 특허법원(Patent Court)<sup>5)</sup>이 있다.

중요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이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다. 항소법원은 형사부(Criminal Division)와 민사부(Civil Division)로 구성<sup>6)</sup>된다.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은 2005년 개정 법률에 의해 설치<sup>7)</sup>되었다. 예전에는 상원(House of Lords)이 최종심을 담당하였다. 현재 최고법원에는 12명의 대법관이 있으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 2. 특허소송 전담 법원

특허소송은 법률체계상 민사법원인 지역법원(County Court)과 고등법원(High Court)이 제1심의 특허소송을 담당한다. 그런데 영국은 특허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각 전문법원을 두고 있다. 지역법원급으로는 특허지역법원(Patents County Court, PCC)을 설치하였고, 지방법원급으로는 특허법원(Patent Court, PC)을 두고 있다. 한편, 이들 법원의 소송결과에 불복하면 항소법원(Court of Appeal) 및 최고법원(Supreme Court)에 차례로 항소할 수 있다.

### 가) 특허법원(PC)

특허법원은 『Senior Courts Act』 제6조 제1항에 근거하며, 1심 민사법원(High Court)의 형평법부(Chancery Division) 소속의 특별법원으로 1977년 설립되었다. 2011년 현재 8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다.

### 나) 특허지역법원(PCC)

특허지역법원은 1998년 『상표, 디자인, 특허에 관한 법률(1998)』(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98) 제287조~제29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제 특허지역법원의 업무는 1990년부터 개시되었다. 위 법률 제287조 제1항에 의하면,

Lord Chancellor(헌정부 장관)는 지역법원(County Court)을 특허지역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초 시행 당시인 1990년에는 “Edmonton County Court”를 특허지역법원으로 지정하였다가 1994년 7월 1일부터는 “The Central London County Court”를 특허지역법원으로 대체하여 지정하고 있다.<sup>8)</sup> 그 밖에 현재까지 특허지역법원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법원은 없다. 위 법률 제287조 제2항은 특허지역법원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관할권을 갖도록 하였다. 한편, 위 법률 제287조 제1항은 특허지역법원이 특허 및 디자인 사건, 또는 특허·디자인에 부수적인 사건에 대해 특별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후 다른 법률들의 개정을 통해 영국 등록상표(UK registered trade marks)<sup>9)</sup>, 유럽지역상표(Community Trade marks)<sup>10)</sup>에 대한 관할권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특허지역법원은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passing off)에 대한 보통관할권도 갖는다. 『상표, 디자인, 특허에 관한 법률(1998)』(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98) 제2항에 의하면 특허지역법원이 특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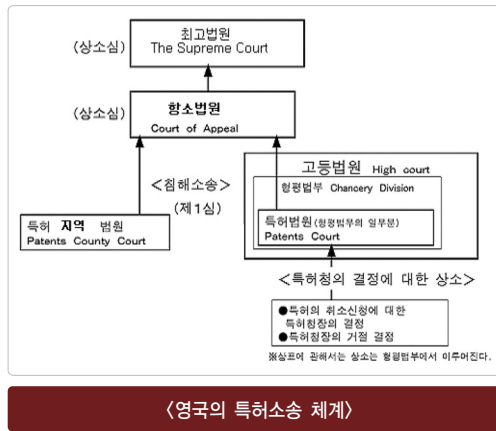
할권을 갖는 사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사건가액 한도(Financial limits)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The Patents County Court (Financial Limits) Order 2011”에 의하면 소송 가액의 상한은 50 만파운드<sup>11)</sup>이다.

한편, 위 법률 제289조에 따라 특허지방법원 사건은 특허법원(patents court)에 이송되거나 이송받을 수 있고, 제292조에 의해 등록 특허변리사(Patent agent)도 변호사(Solicitor)와 같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 3. 영국의 특허소송 체계

영국의 지재권 소송 종류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대체로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지재권의 무효 소송, 그리고 지재권 침해 소송으로 구분된다. 기타 특허권의 포기, 정정, 실시권 등에 관한 분쟁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의 경우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Patent Court)에 제기해야 하고<sup>12)</sup>, 위 특허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허가를 얻어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항소할 수 있다.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특허지방법원(PCC)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허



무효와 침해소송은 특허법원(PC)과 특허지방법원(PCC)의 경합 관할이다.

디자인권과 관련된 분쟁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경우는 디자인권의 존부, 존속기간 및 디자인창작자에 관한 분쟁(“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246조<sup>13)</sup>)인데, 이에 관한 특허청장의 결정

4) “Senior Courts Act” 제5조 : Divisions of High Court.  
 (1) There shall be three divisions of the High Court namely—  
 (a) the Chancery Division, consisting of [the Chancellor of the High Court, who shall be president thereof,] the Vice-Chancellor, who shall be vice-president thereof, and such of the puisne judges as are for the time being attached thereto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b) the Queen’s Bench Division, consisting of the Lord Chief Justice, [the President of the Queen’s Bench Division], [the vice-president of the Queen’s Bench Division] and such of the puisne judges as are for the time being so attached thereto; and  
 (c) the Family Division, consisting of the President of the Family Division and such of the puisne judges as are for the time being so attached thereto.  
 5) “Senior Courts Act” 제6조 : The Patents, Admiralty and Commercial Courts.  
 (1) There shall be  
 (a) as part of the Chancery Division, a Patents Court; and  
 (b) as parts of the Queen’s Bench Division, an Admiralty Court and a Commercial Court.  
 6) “Senior Courts Act” 제3조 : Divisions of Court of Appeal

(1) There shall be two divisions of the Court of Appeal, namely the criminal division and the civil division.  
 7) “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제23조 : The Supreme Court  
 This section has no associated Explanatory Notes  
 (1) There is to be a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2) The Court consists of 12 judges appointed by Her Majesty by letters patent.  
 (3) Her Majesty may from time to time by Order in Council amend subsection (2) so as to increase or further increase the number of judges of the Court.  
 8) “Patents County Court (Designation and Jurisdiction) Order 1990” and “Patents County Court (Designation and Jurisdiction) Order 1994”  
 9) County Court Jurisdiction Order 1991 article 2(7A)  
 (7A) A patents county court and the county courts listed in paragraph (7B) shall have jurisdiction under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Trade Marks Act 1994 (1) (a) sections 15, 16, 19, 23(5), 25(4)(b), 30, 31, 46, 47, 64, 73 and 74;  
 (b) paragraph 12 of Schedule 1; and  
 (c) paragraph 14 of Schedule 2,  
 to include jurisdiction to hear and determine any claims or matters ancillary to, or arising from proceedings brought under such provisions.  
 10) “The Community Trade Marks Regulations 2006 regulation 12”, designation of Community trade mark courts,  
 12–(1) For the purposes of Article 91 of the 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 the following courts are designated as Community trade mark courts—  
 (a) in England and Wales (i) the High Court; (ii) any county court designated as a patents county court under section 287(1) of 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1); and (iii) the county courts listed in paragraph (2);  
 11) “The Patents County Court (Financial Limits) Order 2011” 제2조:  
 This section has no associated Explanatory Memorandum  
 2– (1) In relation to all proceedings within the special jurisdiction of a patents county court and in which a claim is made for damages or an account of profits, the amount or value of that claim shall not exceed £ 500,000.  
 (2) In determining the amount or value of a claim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a claim for  
 (a) interest, other than interest payable under an agreement, or  
 (b) costs, shall be disregarded.  
 12) “Senior Courts Act” 제62조 : 62, Business of Patents, Admiralty and Commercial Courts.  
 (1) The Patents Court shall take such proceedings relating to patents as are within the jurisdiction conferred on it by the MIPatents Act 1977, and such other proceedings relating to patents or other matters as may be prescribed.  
 13)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246조 Jurisdiction to decide matters relating to design right  
 (1) A party to a dispute as to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may refer the dispute to the comptroller for his decision—  
 (a) the subsistence of design right,  
 (b) the term of design right, or  
 (c) the identity of the person in whom design right first vested;  
 and the comptroller’s decision on the reference is binding on the parties to the dispute.

에 대한 불복의 소는 고등법원(Hight Court)에 제기해야 한다.

한편,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247조<sup>14)</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시권의 기간 해결에 대한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소는 등록디자인 항소심판소(Registered Design Appeal Tribunal)에 제기해야 한다<sup>15)</sup>.

상표권의 경우 특허청의 결정, 침해 소송은 모두 고등법원 내의 형평법부가 관할하며, 상소심은 항소법원 및 최고법원이 심판한다.

거절불복소송은 특허청 결정이 있는 후 28일<sup>16)</sup> 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에 관해 등록디자인 항소심판소(Registered Design Appeal Tribunal)에 제기하는 소송은 절차에 관한 사항은 14일 이내에, 실체에 관한 사항은 6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sup>17)</sup>



#### 4. 특허 무효심판 및 무효소송

특허 무효란 특허권이 설정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특허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인이 특

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sup>18)</sup>을 제기하여야 하고, 별도의 특허무효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특허무효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영국 특허법 제72조<sup>19)</sup>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누구든지 특허의 무효를 특허법원, 특허지방법원 또는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다. 특허 무효소송은 주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반소로서 제기된다. 이하 영국에서의 특허 무효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 가) 영국 법원에서의 특허 무효소송

특허 무효소송은 특허법원 및 특허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특허가 무효되어야 하는 근거는 소장(statement of case)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증거공개, 사건관리회의 등과 같은 소송 절차는 특허침해소송 절차에서와 같다. 특허권자는 특허 무효소송이 제기된 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허 명세서를 보정<sup>20)</sup>할 수 있다. 특허 무효소송에 대한 항소는 항소법원에 제기하며, 특허 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영국 특허청에서의 특허 무효심판

특허청에서의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청에 특허 무효심판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특허가 무효되어야 하는 근거가 기재된 진술서는 특허 무효심판 청구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되는 서류는 사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된 사본은 특허권자에게 송부된다. 특허권자가 특허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다투고 싶은 경우에는, 특허 무효심판 청구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통상 6주 이내에 반박서(counter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 무효심판 청구인은 특허가 무효되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특허권자로부터 반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주 내에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특허권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증거의 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청구인은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취할 수 있으며, 이때 특허청장은 추후 특허청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법원의 허락 하에 법원에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장은 특허 무효심판 청구의 취하를 불허하고, 특허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특허 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되

는 경우, 청구인은 법원에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특허 무효심판이 특허청에 계류 중인 경우에 법원에 별도의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특허청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특허청에서의 특허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지며, 특허법원에서의 판결에 대한 상소는 항소법원에 제기한다.

### 5. 불침해 선언(declaration of non-infringement) 청구

특허권이 없는 제3자가 물건을 제조하는 때는 다른 사람의 특허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받기 위한 제도가 영국의 특허 불침해 선언 청구제도이다. 영국 특허법 제71조<sup>21)</sup>에 의하면, 자신의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술의 실시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언을 해줄 것을 법원 또는 특허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자신의 기술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특허권자에게 비침해 선언의 확인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②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불침해

선언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불침해 선언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실시는 영국 내에서의 실시에만 한정되며, 실시하고자 하는 기술을 나타내는 샘플이나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청장이 하는 불침해 선언(declaration)은 법원에 의한 선언(declaration)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하게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다.(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한 우리나라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고 단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sup>22)</sup> 효과가 있을 뿐이다.

다음호에 계속

2011. 9 |

14)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247조 Application to settle terms of licence of right.  
 15)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249조: Appeals as to terms of licence of right(1)An appeal lies from any decision of the comptroller under section 247 or 248 (settlement of terms of licence of right) to the Appe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section 28 of the Registered Designs Act 1949.  
 16) Part 52 of the "Civil Procedure Rules"  
 17) Register Desings Appeal Tribunal Rules 1950  
 1.- (2)The notice of appeal shall be filed (a) in the case of a decision on a matter of procedure, within 14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cision; and (b) in any other case, within six weeks after the date of the decision.  
 18)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

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9) "Patents Act 1977" 제72조 : Power to revoke patents on application  
 (1)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Act, the court or the comptroller may on the application of any person by order revoke a patent for an invention on (but only on)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that is to say:  
 (a)the invention is not a patentable invention;  
 (b)that the patent was granted to a person who was not entitled to be granted that patent;  
 (c)the specification of the patent does not disclose the invention clearly enough and completely enough for it to be performed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d)the matter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of the patent extends beyond that disclosed in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as filed, or, if the patent was granted on a new application filed under section 8(3), 12 or 37(4) above or as mentioned in section 15(4) above, in the earlier application, as filed;  
 20) "Patents Act 1977" 제75조 : Amendment of patent in infringement or revocation proceedings  
 75.- (1) In any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or the comptroller in which the validity of a patent may be put in issue the court or, as the case may be, the comptroller may, subject to section 76 below, allow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to amend the specification of the patent in such manner, and subject to such terms as to advertising the proposed amendment and as to costs, expenses or otherwise, as the court or comptroller thinks fit.  
 (2) A person may give notice to the court or the comptroller of his opposition to an amendment proposed by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under this section, and if he does so the court or the comptroller shall notify the proprietor and consider the opposition in deciding whether the amendment or any amendment should be allowed.  
 (3) An amendment of a specification of a patent under this section shall have effect and be deemed always to have had effect from the grant of the patent.  
 (4) Where an application for an order under this section is made to the court, the applicant shall notify the comptroller, who shall be entitled to appear and be heard and shall appear if so directed by the court.  
 21) "Patents Act 1997" 제71조 : Declaration or declarator as to non-infringement  
 (1)Without prejudice to the court's jurisdiction to make a declaration or declarator apart from this section, a declaration or declarator that an act does not, or a proposed act would not,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a patent may be made by the court or the comptroller in proceedings between the person doing or proposing to do the act and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notwithstanding that no assertion to the contrary has been made by the proprietor, if it is shown-  
 (a)that that person has applied in writing to the proprietor for a written acknowledgment to the effect of the declaration or declarator claimed, and has furnished him with full particulars in writing of the act in question; and  
 (b)that the proprietor has refused or failed to give any such acknowledgment.  
 (2) Subject to section 72(5) below, a declaration made by the comptroller under this section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declaration or declarator by the court.  
 22)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발명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등록된 특허권 공유지분에 대한 민사상 말소청구의 허용 여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 청구를 하여 특허권을 등록무효시키는 것이 종래의 방법이나,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일반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말소청구와 이전등록청구 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알아보자.

[대전고등법원 2010. 5. 14 : 선고 2009나 6989 판결]



서 영 철

특허법인 이노 변호사·변리사  
전특허법원 판사

## I. 인정된 사실 관계

원고는 피고의 동생으로서 원고회사에서 농업용 기계의 개발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재산권 및 관련 소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1. 9. 초 순경 씨레날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트랙터용 씨레'를 개발한 후 피고로 하여금 특허법률사무소에 특허출원을 의뢰하면서 출원인을 원고와 원고회사의 공동 명의로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1. 9. 3. 특허출원을 의뢰하면서 발명자를 원고로 한 반면 출원인은 피고 임의로 원고들과 피고 3인의 공동으로 하였고, 그 결과 2004. 3. 17.

위 3인의 공동 명의로 특허등록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공동특허권자로 등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9. 4. 16.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특허권 중 피고 명의로 경로된 부분에 대한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하는 이전등록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제1심과 제2심은 모두 원고의 등록말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 각하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II. 법원의 판단

본 사건에서는 우선 이러한 청구를 특허심판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일반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면 등록말소와 이전등록 청구 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 사항이었고, 그 밖에 피고가 발명에 기여한 것이 맞는지, 원고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닌지 등의 부수적인 쟁점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주된 2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 1 본안 전 항변 부분

특허심판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제소할 것이 관할위반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법원은 “특허심판원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나, 공동특허권자인 원고들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동출원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원고가 공동출원을 묵시적으로 허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 민사법원에서도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권리자가 특허등록받은 발명이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과 동일하고 신규성·진보성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오로지 권리의 귀속만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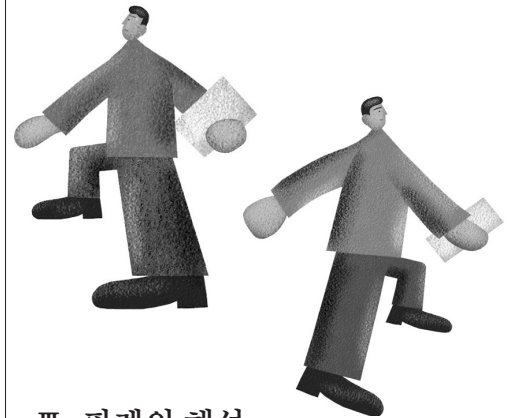
권이전등록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2 특허권 공유지분의 등록말소 또는 이전등록청구의 가능 여부

본 안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된 부분은 발명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허 중 피고 명의로 등록된 부분에 관하여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이 공동발명자이거나(구체적인 사정을 거론하며) 발명에 기여하였으므로 공동특허권자로 등재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특허출원을 의뢰하면서 발명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원고가 특허권자로 등재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허의 발명자는 원고라 할 것인데 공동출원에 관하여 특허법 제44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피고가 발명자인 원고와 공동출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 사이에 공동출원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그러한 합의 없이 이 사건 특허를 공동출원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특허 발명에 기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 중 피고 명의의 등록 부분은 공동출원의 합의가 없어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를 원고와 공동으로 발명하였다거나 원고의 발명에 기여하였다는 주장은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III. 판례의 해설

### 1 들어가는 말

발명에 대해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특허청의 권한이고, 특허권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특허심판원의 권한이다. 특허권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은 특허등록원부의 기재를 말소하는 것은

로 집행되므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특허권의 등록말소를 허용하는 것은 등록무효심결에 의하지 않고 특허청이 설정한 권리를 무효로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특허권의 출원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 이러한 등록말소절차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통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다. 본 사안은 무효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무효로 하는 것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반 법원에서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안이다.

특허법상 특허받을 권리는 발명자나 그 승계인에게 있으므로(제33조),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등록 전에는 특허거절이유가 되고(제62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 등록 후에는 특허무효사유가 된다.(제133조 제1항 제2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거절되면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출원일을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시킬 수 있고(제34조), 일단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로서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역시 자신의 출원일을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시킬 수 있

다.(제35조) 그러나 진정한 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권리자가 스스로 출원 사실을 공개하거나 심사절차에서 특허출원이 공개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무권리자의 출원 사실을 알기 어렵고, 특허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제기가 없으면, 출원서류에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기재된 자가 무권리자일 가능성까지 심사하여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출원이 거절되거나 무효심결이 확정된지 30일을 경과한 후 또는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 특허출원을 하였다면 출원일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고,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전에 이미 무권리자의 출원이 공개되었다면 출원일의 소급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진정한 권리자의 출원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출원을 승계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막고 간단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1인의 노력보다는 다수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연구개발자, 설비와 재료 제공자, 연구비를 지원하는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관여하게 된다. 이 경우 어느 범

위까지의 관여자를 발명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확정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도 파생되지만,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사규, 계약, 관행 등으로 발명자와 함께 또는 발명자에 갈음하여 회사, 연구팀장, 투자자 등을 출원인으로 특허등록하는 사례도 있다.

본 사건은 이와 같이 누가 발명자인지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2인 이상 공동으로 특허출원하여 등록되고, 공동특허권자 상호 간에 일부 공동특허권자에게는 특허받을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해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사안은 우선 분쟁의 해결을 위해 어느 기관에 판단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지, 특허심판원 이외에 일반 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가능한지, 일반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등록말소청구와 이전등록청구 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등록말소 또는 이전등록의 원인이 되는 법률상의 근거는 무엇인지 문제된다.



2

일반 법원의 관할 여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가지고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므로(제33조), 발명을 하지도 않았고 그 승계인도 아닌 자가 공동발명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무권리자가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권리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해당 공유지분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종래 대법원 판례에서는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할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0.1.28. 선고 2007후1022 판결, 대법원 1984.3.27. 선고 81후59 판결 등), 실무에서는 이에 따라 주로 특허침해의 경고장을 받은 자, 침해 소송을 당한 자, 동종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자 등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에게

이해관계인 적격을 인정하였다.

즉, 종래 판례와 실무에서 논의된 이해관계인은 형식상 특허권자로 등재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관한 것이었고, 공동특허권자 상호간에 특허받을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부 공동특허권자가 다른 공동특허권자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의된 사례는 없었다. 공동특허권자는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고 다른 공동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도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른 공동특허권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특허권의 공유자가 공유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제3자가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므로(제139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특허법 규정에 일관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원고회사 및 피고가 모두 심판청구인이 되고, 원고, 원고회사 및 피고 모두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위 특허법 규정은 제3자가 공동특허권자를 상대로 또는 공동특허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공동특허권자 사이에 공유지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다. 결국, 특허권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이 특허심판원의 권한 사항이기는 하나, 특허법에는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이 문제되거나, 특허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등록을 받은 무권리자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제133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의 제3자에 대한 지분 양도,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설정 등 공동특허권자 상호간의 특허권 처분과 이용관계에 관한 규정(제99조)만 존재할 뿐 공동특허권자 상호간에 특허받을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관하

여는 아무런 절차적 규정이 없는 셈이고, 현재 이에 관한 실무지침이나 판단 사례도 찾기 어렵다.

한편, 공동특허권자 상호 간에 공유지분의 적법 여부를 다루는 경우는 외관상 권리자와 비권리자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권리자 상호 간에 동일한 권리의 양적인 귀속을 다루는 경우이므로 위 특허법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특허권을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사이에 공동출원의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공동출원을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는지 여부나 무권리자가 특허등록받은 발명이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과 동일하고, 신규성·진보성 등 특허요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으며 오로지 권리의 귀속만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나 말소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판단은 특허심판원에 일임하여야 할 전문적 기술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사적 사안으로서 일반 법원에 의한 판단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다.

대상 판결은 이와 같이 무권리자가 등록받은 발명이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과 동일하고 신규성·진보성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공동특허권자 상호 간에 공동출원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공동출

원을 묵시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여부와 같이 오로지 권리의 귀속만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 관할을 인정할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위 판결의 취지는 특허심판원의 관할을 직접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 추가적인 관할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시에서는 공동특허권자가 다른 공동특허권자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결국 이러한 사안에서 특허심판원의 관할이 부정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법 개정이나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명확한 규정과 법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이 전 등록 또는 등록 말 소 청구의 허용 여부

무권리자가 임의로 자신을 공동특허권자로 등재한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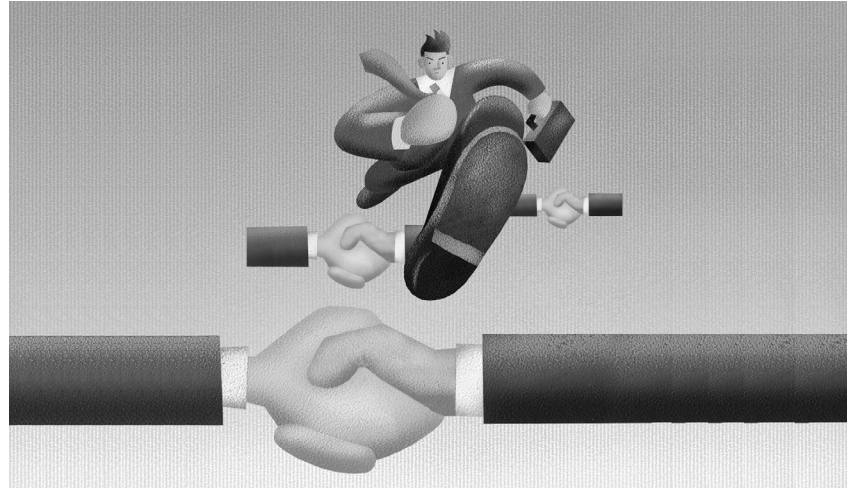
권리자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전등록을 청구하거나 무권리자의 공유지분에 대해 등록말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무권리자의 공유지분이 등록말소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므로 이전등록청구와 등록말소청구의 결과는 동일하다.

무권리자 명의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독일 특허법 8조, 프랑스 지적소유권법 611조8, 영국 특허법 37조 9항은 입법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특허법에는 규정이 없다.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 2001. 6. 12. 판결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무권리자가 출원인 명의 변경을 하여 특허권설정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이전등록청구를 인용하였고, 도쿄지방법원 2002. 1. 17. 판결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없이 무권리자의 출원만 있었던 사안에서 이전등록청구를 기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은 양도인이 특허출원한 후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명의 변경이 이루어져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

하게 되는 때에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면 그 양도 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됨에 대하여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일본 최고재판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의하여 이전등록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지방법원 2003. 7. 25. 선고 2002가합73123 판결은 무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에 관한 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원이 특허청의 무효심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무권리자에게 부여된 실용신안 및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고, 진정한 권리자를 위하여 새로운 실용신안 및 디자인설정 등록을 하여주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의한 등록을 실용신안등록 및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로 규정하여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특허청으로 하여금 제1차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특허청의 행정처분인 설정등록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발생하게 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바로 무권리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이전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항소 없이 확정됨)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들 명의로 특허출원된 본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피고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특허 출원을 의뢰하면서 발명자를 원고로만 지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발명자로서 특허받을 정당한 권리자라고 보고, 특허법 제44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인 상호간에 공동출원을 한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특허받을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와 공동출원에 관

한 합의를 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을 공동출원인으로 등재하였으므로 피고 명의로 등재된 특허권 지분은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전등록청구가 아닌 말소등록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IV. 결론

위 판결에서 공동특허권자가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공동특허권자 상호간에 공유지분의 적법한지 다툼이 있는 사안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이를 위해 특허권 공유지분의 등록말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관한 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가능한지, 본 판례는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추후 관련 판례가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2011. 9 |

# 연예인 이윤미 쇼핑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 네트워크 기반 상거래 브랜드 관리 실태 및 대응방안

탤런트 이윤미,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sbs 예능프로그램에서 상표권 침해로 경찰서, 검찰을 오간 적이 있는 사실을 고백하며 브랜드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뿐만 아니라, 예전의 티켓몬스터도 사이트 오픈 불과 이틀 후에 바로 제3자가 '티켓몬스터'를 출원하여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할 뻔 했으며 네이버 지식IN과 현재 상표 업무 중에도 소셜커머스업 또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분 중에 이와 같이 제3자의 너무 빠른 선출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 소 정

知心 IP&Company 상표팀 변호사

**얼**마 전 작곡가 주영훈의 부인으로 잘 알려진 탤런트 이윤미가 유명 예능 프로그램인 강심장에서 자신이 '경찰서에 들락거리는 여자'라고 고백하며 억울하게 상표권 침해자로 오인 받았던 사실을 털어 놓았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탤런트 이윤미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쇼핑몰 이름을 상표 등록 해 놓지 않았다. 그런데 제3자가 그 이름을 상표 등록하여 쇼핑몰 이름의 정당한 사용자인 이윤미에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검찰 고소로까지 이어졌고, 그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료로 월 3,000만 원까지 요구하였다고 한다.

한편, 1년 전 우리나라 소셜커머스의 선두주자인 티켓몬스터는 '티켓몬스터' 상표권을 한 개인에게 빼앗길 뻔 했다. 티켓몬스터 측이 사이트를 오픈한 지 단



하루 만에, 티켓몬스터와는 관계가 없는 A씨가 '티켓몬스터' 로고까지 결합하여 상표 출원을 하였고, 티켓몬스터 측은 오픈일로부터 15일 뒤에야 상표 출원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먼저 사용한 자보다 먼저 특허청에 상표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상표 출원을 한 후 아직 상표권 등록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선출원된 상표의 출원서류를 첨부하여 향후 등록될 경우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표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티켓몬스터' 상표의 선출원자인 A씨는 티켓몬스터 측에 자신이 선출원자임을 알리고 상표권 침해의 경고를 하면서, 상표권을 양도할 테니 엄청난 금액의 상표권 양도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 당시 '티켓몬스터' 측은 엄청난 금액의 상표권 양도 대가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브랜드를 변경하기로 하고 네티즌에게 새로운 브랜드 공모전까지 열었다. 하지만, '티켓몬스터'가 대박이나면서 '티켓몬스터' 측은 후에 A씨와 상표권 양수 협상을 통해 티켓몬스터 상표권을 양수받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실무에서 많은 고객들과 상담을 하면서 네트워크 기반 상거래, 즉, 인터넷 쇼핑물, 소셜커머스 사이트, 소셜

커머스 비교모음 사이트 등에서 앞서 말한 이윤미 쇼핑물 사례나 티켓몬스터와 유사한 사례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최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 사이트에서 유독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터넷 쇼핑물이나 소셜 커머스 사이트 브랜드의 경우, 일반 제품 브랜드와는 달리 그 태생 자체가 정보 확산 속도와 그 파급력이 엄청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소셜 커머스의 경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그 소식이 단 몇 시간 만에도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일반 대중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지식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노출 전에 미리 상표 출원을 하지 않은 것을 기회로 상표 제도의 '선출원주의'의 함정(?)을 이용한 제3자가 브랜드를 선출원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서비스업보다 비교적 사업 준비 기간이 짧은 네트워크 기반 상거래의 경우 후발업체들이 하루가 멀다 하게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 업계에도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확연하게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신중 사업이다 보니 미처 생각치 못한 부작용도 속출함으로 인해 소비자 들은 자연스럽게

신뢰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어디인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 네트워크 기반 상거래 서비스에도 웹사이트마다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오프라인 기반의 제품/서비스 브랜드와 같이 네트워크 기반 상거래에 있어서도 '브랜드'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고, 처음에는 웹사이트 이름을 브랜드화하여 상표권으로 보호할 생각을 가지지 못했으나 브랜드 관리 및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여 브랜드가 이미 대중에게 노출된 이후에야 상표 출원을 생각하게 되고, 상표 출원을 생각한 즈음 선행 상표 검색을 해보면 제3자가 이미 자신의 브랜드를 선출원해 놓은 사례가 허다하게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기반의 상거래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의 명칭을 반드시 '브랜드화'해야 할 생각을 해야 한다. 이미 대중은 인터넷 쇼핑물이나 소셜 커머스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품질적인 차이를 인



식하기 시작했고 대중은 그 품질의 차이를 웹사이트의 명칭, 즉, '브랜드'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웹사이트 명칭을 브랜드화하여 알리고 반드시 그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꾀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브랜드 관리를 해야 하며, 제3자가 이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의 명칭을 먼저 상표 출원한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까? 이하에서는 상표법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셜 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알고 있어야 할 구체적인 법적 조치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최선은 브랜드 노출 전에 반드시 상표 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 한다. 상표법이 선출원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정답은 브랜드가 대중에게 또는 제3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미리 상표 출원을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원을 먼저 해 놓으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법률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당장의 상표 출원 비용이 아까워 출원을 차일피일 미뤄두고 있다가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서 상표 출원에 대해 급하게 생각하는데 그 때에는 이미 제3자가 선출원해 놓은 상황인 경우

도 종종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가급적 브랜드가 노출되기 전에 상표 출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사업 초기에는 당장에 내야 하는 상표 출원 대리인 수수료 및 특허청 관납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후에 상표 출원을 서두르지 않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비용을 고려한다면 초기의 상표 출원 비용은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될 필수 비용인 것이다.

상표 출원 시에는 유능한 대리인(변리사)을 찾아 철저한 사전 검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검색 과정에서 동종업계에 선출원 또는 선등록한 유사상표가 있는 지 또는 자신의 브랜드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인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사전 검색은 브랜드의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식별력도 강하고 타인의 상표권과의 충돌 가능성도 낮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브랜드 네이밍 과정에서부터 상표 전문 변리사와 같은 브랜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 검색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출원을 미룬 사이에 제3자가 먼저 상표출원을 한 경우라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출원을 미룬 사이 또는 출원을 빨리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브랜드가 그 전에 노출되어 제3자가 이미 출원을 먼저 한 때에는 제3자의 상표가 출원 중이라면 정보제공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그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이 된 경우라면 무효심판을 통해 그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상표법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한

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그런데, 상기 법적 근거 조항에서 살펴 보듯이 정보제공,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같은 법적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자신의 상표, 즉, 인터넷 쇼핑몰 또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이름이 수요자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할 것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 일관되게 상표의 유명성, 즉, 주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로서 결국 객관적인 증거방법들을 통해 일반수요자들의 다수가 그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여 유명한 브랜드이냐, 즉, 주지/저명 상표인지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네트워크 기반 상거래의 경우 일주일 정도의 단기간 내에도 브랜드가 전국적인 주지도를 얻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제품 브랜드의 주지성 판단에 적용했던 기존의 판단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네트워크 기반 상거래의 경우 정보의 파급력과 확산 속도가 엄청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주 단기간 안에 주지성을 가질 수 있는 점이 충분히 참작되어 매출액, 광고액, 사용기간에 있어서는 주지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소셜네트워크의 리트윗 횟수, 스크랩수,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지성이 입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브랜드가 어느 정도 업계에서 상당한 브랜드 인지도를 획득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3자가 이미 상표를 선출원한 상태라면 앞서



말한 정보제공,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통해 제3자 출원을 무력화시키는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지성에 대한 판단시점이 대부분 제3자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인데, 이는 제3자의 상표 출원 시점에 이미 자신의 브랜드가 상당한 주지도를 획득해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지성의 판단시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브랜드가 유명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주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취합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여 다시 말하자면, 네트워크 기반 상거래의 경우 그 브랜드의 확산 속도가 기존의 비네트워크 기반 상거래, 제품 브랜드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브랜드 네이밍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색을 통해 그 네이밍이 독점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네이밍인지 판단하고, 브랜드가 공중에 노출되기 전에 상표 출원을 완료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제3자가 선출원한 경우라면 그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포기할 생각을 하기 전에 자신의 브랜드가 어느 정도의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판단이 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제3자의 출원/등록상표를 백지화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2011. 9 |

# IP 범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IP 범죄 대응 움직임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 나아가야 하는지 모색해 보자.



이 인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인프라팀 연구원

## I. 들어가며

지난 7월, 미국 백악관은 IP 범죄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이 「2011 영국 IP 범죄 전략」 보고서와 「2011 영국 IP 범죄 연례보고서」를 연이어 발표하였다. 이는 양국 모두 IP 범죄가 IP 집행에 있어 중요한 이슈임을 인식하고 집행 노력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우리나라는 7월 20일자로 발효된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윤종용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위원회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

는데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주요국의 IP 범죄 대응 움직임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 나아가야 하는지 모색해보겠다.

## II. Intellectual Property Crime이란?

### (1) 정의

IP 범죄(IP crime)는 기술 등의 발달로 점차 고도화되고 있고 유형도 다양해져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아직까지 명확한 IP 범죄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IP 범죄에 대해 말할 때는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여러 유형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를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IP 범죄를 위조(counterfeiting)나 불법 복제 등의 해적행위(piracy)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크게 디지털 범죄와 물리적 범죄로 나누고 있다.<sup>1)</sup> 디지털 IP 범죄의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디지털 형식에 대해 불법적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을 말하며 P2P 서비스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 등이 이에 해당된다.<sup>2)</sup> 물리적 IP 범죄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에 대해 위조하거나 침해 또는 복제된 상품을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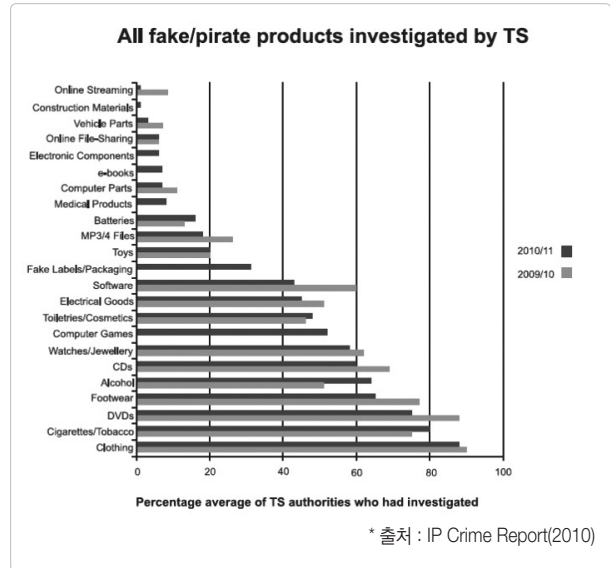
범죄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IP 범죄를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음비계법(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등의 세부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여 파악하고 있는 추세이며,<sup>4)5)</sup> 미국의 경우는 IP 범죄를 경제범죄에 속하는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파악하여 화이트칼라 범죄 유형에 포함시켜 별도로 다루고 있다.<sup>6)</sup>

**(2) 규모**

2009년 OECD는 2008년까지 유형자산에 대한 세계 위조 및 불법복제의 규모를 조사한 바 있으며 약 2,500억 달러에 이르는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형식 등의 무형자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IP 범죄 규모의 척도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sup>7)</sup>

유럽연합(EU)의 경우 집행위원회가 2009년 7월 발표한 결과를 참고하면 2008년 EU 지역 외로 수출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로 의심되는 품목들의 규모가 2007년에 비해 126% 증가한 1억 7,800만 달러의 규모로 조사되었다.<sup>8)</sup>

영국 세관에서 2009~2010년 동안 압류한 침해품의 규모는 약 400만 건이었으며, 피해액은 약 4,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침해비율이 높은 품목은 의류였으며 그 다음으로 DVD가 2009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침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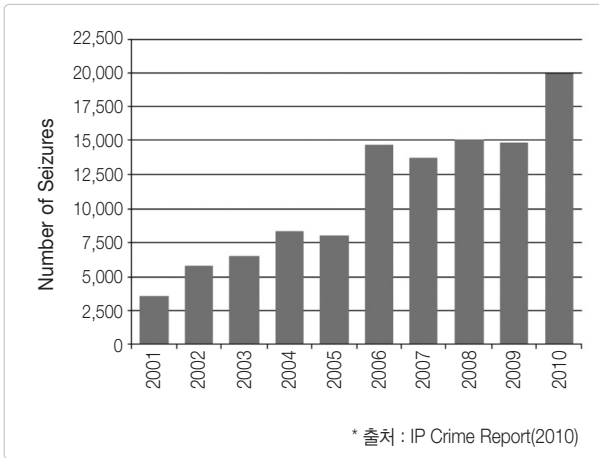


[그림 1] 영국 거래기준국(TS)이 조사한 침해품목 비율

미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 관세집행국(ICE)이 지난 1월 공동으로 발표한 2010년 회계연도 압류내역 보고를 참고하면 매년 지식재산권 침해로 압류하는 물품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액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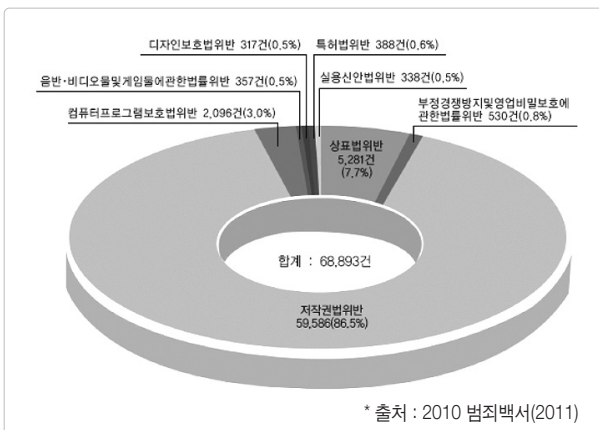


1) IP Crime Group, 2010 IP Crime Report, 2010, pp.7-8.  
 2) Id.  
 3) Id.  
 4) 법무연수원, 『2010 범죄백서』, 2011, p.103.  
 5) 박강우, 『지식재산권침해범죄의 실태와 형법적 규제』, 『형사정책』, 제22권 제2호, 2010, pp.105-106.  
 6) FBI 홈페이지(<http://www.fbi.gov/>)(최종방문 : 2011.8.16).  
 7) IP Crime Group, 2009 IP Crime Report, 2009, p.7.  
 8) Id.  
 9) supra note 5, p.48.



[그림 2] 미국의 연도별 지식재산권 침해품 압류 건수<sup>10)</sup>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발생한 IP 범죄는 35,166 건인데 비해 2009년에는 68,893건으로 범죄 발생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죄명별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전체 중 8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상표법 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등이 있다.<sup>11)</sup> 한편 전체 특별법 위반 범죄 중에 IP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기준 5.1%로 아직은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sup>12)</sup>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추세가 향후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



[그림 3] 지식재산권범죄 죄명별 구성비(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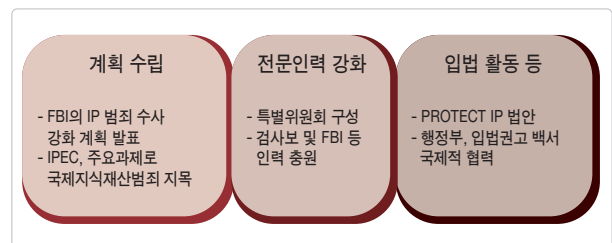
### Ⅲ. 범죄 대응 현황

#### (1) 미국

미국의 경우 2010년부터 대대적인 IP 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주 및 지역의 단속기관, 국제 단속기관들과 협력하여 2010년 2월,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단속노력을 감독 및 조정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같은 해 4월에는 Gary G. Grindler 법무부 차관이 15명의 검사보를 새로 임명하고, 20명의 연방수사국(FBI) 특수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미국 전역에 수사 전담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기도 하였다.

한편 FBI는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10월 발표하며 불법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다국적 범죄 집단, 디자인과 발명, 영업비밀, 문학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이 FBI의 지식재산권 범죄 조사 대상으로, 상용항공기 및 군용항공기의 모방품 수사와 관련하여 연방항공국 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공동작전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2011년 6월에는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인 Victoria Espinel이 법무부의 가장 큰 과제로 온라인 해적 행위와 같은 국제지식재산 범죄를 지목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IP 범죄에 대해 민·형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화법(PRO-IP법)을 2008년 제정한 이후 가장 활발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림 4] 미국의 IP 범죄 대응 흐름도

법제적인 측면의 활동도 활발하여 지난 3월, Patrick Leahy 상원의원의 지지 하에 PROTECT IP법안 (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이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도메인네임 등록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등록된 도메인네임 등록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허가하는 등 온라인 지식재산권 범죄를 처벌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행정부가 IPEC의 연례보고서를 반영하여 지식재산집행에 대해 입법권고 백서를 발간하여 경제적 간섭행위와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의한 의약품 범죄 등에 대해 양형 최대기준의 상향을 권고하는 등 입법적인 권고사항들을 제안하였다.

## (2) 영국

영국은 2004년부터 IP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지식재산범죄전략(National IP Crime Strategy)을 수립하여 UKIPO에 의해 IP Crime Group이라는 범죄담당그룹을 조직하였으며 주요 IP 범죄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룹의 역할은 IP 범죄와 관련된 정책 문제들 논의, 협동조치 구현, IP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IP 범죄 보고서 발간이다.<sup>13)</sup> 200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집행 중심의 보고서였으나 최근 보고서는 디지털 IP 범죄에 대한 유형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범죄 보고서 외에도 IP 보호를 위해 각종 범죄 대응책 및 보호 전략을 소개하는 자료들도 발간하고 있다.<sup>14)</sup>



[그림 5] 영국의 IP 범죄 대응 흐름도

국가적인 수준의 대응을 위해 IP 범죄 DB관리 시스템인 ‘Intelligence Hub’를 구축하여 법집행기관들의 수사활동에 협력하고 있으며,<sup>15)</sup> 범죄와의 관련성을 미리 예방 및 단절, 온·오프라인 유통단계에서의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품 거래 제재, 범죄자 재산 몰수 등 IP 범죄의 유인 축소 등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sup>16)</sup> 또한 UKIPO가 영국 전역을 아우르는 활동을 조직화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집행기관, 민간 영역 간 네트워크 형성과 조직화에 더 주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sup>17)</sup>

앞서 IP 범죄 규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정부는 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압류 건수가 증가하자 일차적으로 EU와 협력하여 수출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유통을 근절하고자 하고 있다.

## (3) 국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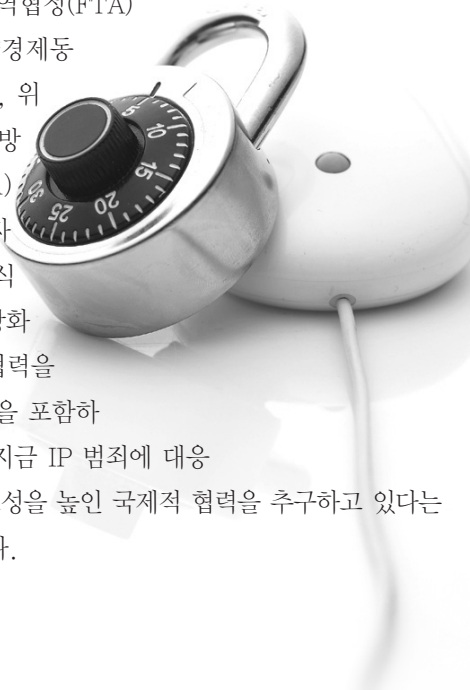
IP 범죄의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과 권리자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 그리고 국제적으

10) US CB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Fiscal Year 2010 Seizure Statistics, 2011, p.5.  
 11) 법무연수원, 『2010 범죄백서』, 2011, p.103.  
 12) 2010년 범죄백서를 참고하면 2009년 국내에서 발생한 특별법 위반의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이 36.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7%이며 IP 범죄는 5.1%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4번째 규모를 차지한다. Id., p.50.  
 13) UKIPO 홈페이지(<http://www.ipo.gov.uk>) 참조(최종방문일 : 2011.8.17).  
 14) Id.  
 15) 한국저작권재단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Global Copyright Protection』, 2011.1, p.59.  
 16) UKIPO, The UK IP Crime Strategy 2011, p.6.  
 17) supra note 13.

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특징<sup>18)</sup>이 있으므로 국제적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여 IP 범죄 근절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법제도와 집행기관이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WIPO 등 국제기구의 노력만으로는 각국의 다양한 법제도를 포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범국가적으로 발생하는 IP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함께 각국의 협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다국적 범죄조직 검거를 위해 국제형사기구(인터폴)는 2002년 각 회원국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IP 범죄 근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류 뿐 아니라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컨퍼런스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별국가들도 국제공조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미국이 2010년 설치한 IP 범죄 특별위원회는 IP 범죄 및 국제 범죄조직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단속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집행자문위원회,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무역대표부(USTR), 국제상공회의소(ICC) 등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정(ACTA) 등 양자 및 다자 조약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등 세계는 지금 IP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을 높인 국제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앞으로의 방향

우리나라의 경우 IP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졌지만 대응과 관련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으나 최근 검찰청(지식재산권 전담부), 특허청(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특별사법경찰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IP 범죄 담당기관과 대검찰청 형사부 산하에 있는 26개의 지방검찰청에 전담부가 합동 단속을 시행하는 등 활발한 검거 활동을 하고 있다.<sup>19)</sup> 그러나 사이버 범죄와 같이 한 국가의 경제와 공공의 안전, 안보까지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크지만 범죄 적발과 처벌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범죄들도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3기)가 IP 범죄 등 4개 범죄군에 대해 2012년까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수립하기로 계획하고 지식재산권 전문위원을 추가하는 등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 침해피해가 하루하루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기술적 진보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 및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IP 범죄에 있어 권리자를 보호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아직 우리는 미국과 같은 세부적인 입법활동이나 구체적인 전략계획 수립 등의 법제도적인 활동은 미흡한 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IP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획 수립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IP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2011. 9 |

18) supra note 5.

19) 한국 검찰청(<http://www.spo.go.kr/spo/major/intellpro/data/intellpro02.jsp>) 참조(최종방문일 : 2011.8.17).

IP

Column

# 우리나라는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변리사 소송대리권의 정당성 여부 및 변호사들의 주장이 정당한지에 대한 고찰



정 동 준  
수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

**변**리사법에 문자 그대로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대리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변리사는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어찌된 영문일까. 변호사들은 말한다.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다. 변리사는 특허출원 대리가 주 업무다. 법학 아닌 분야를 전공한 변호사가 많이 배출된다.’ 등등...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자주 변리사와 변호사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언론매체를 통해 오르내리고 있다. 양측의 주장 중 어떠한 주장이 옳은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잠시 내려놓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생각을 발전시켜보자.

## 우선, 첫 번째 객관적 사실.

변리사법 제2조 및 제8조에 있는 문구는 누가 뭐래도 객관적인 사실이다.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변리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엄연히 법원을 상대로 하는 대리가 변리사의 업무로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변리사법 제8조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여 변리사가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서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규정한다. 법 전문가를 자처하는 변호사들도 위 문구를 보고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를 시원스레 내놓지 못할 정도로 법조문의 문구는 명확하다. 하지만, 저런 법조문이 있음에도 법원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다음으로, 두 번째 객관적 사실.

과학기술계,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특허관련 실무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이다.

2011년 5월 한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한림원, 공학한림원 등 16개 과학기술 단체로 구성된 과학기술유관단체소통협



의회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 소송에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최근 국내 1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꺄럽 특허소송제도 관련 인식조사 설문 결과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의 허용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을 한 기업이 전체의 95.1%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리사 단독 대리를 원하는 응답이 54%로 가장 높았고,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1.1%에 달했다. 현행과 같은 변호사 단독 소송 대리를 지지한 기업은 3.4%에 그쳤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치! 그럼에도 국회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 다음으로, 세 번째 객관적 사실.

변리사가 지재권 관련 소송을 대리할 소양을 갖추고 실제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한다. 변리사는 시험과목에서부터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법 등의 지식재산법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자연과학과 다양한 기술/공학 관련 전공과목을 학습하며 민법, 민사소송법을 통해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자질을 학습한다. 이에 비해 변호사는 지식재산법이라는 선택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만이 선택할 따름이고 자연과학 및 다양한 기술/공학 관련 전공과목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별로 없다. 필자는 지재권 관련 소송에서 진정한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재권법 관련 소양, 기술/공학적 지식 관련 소양, 소송절차 관련 소양이 그것이다. 방금 말했듯이, 변리사는 이 세 가지 소양을 다 갖추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는 어떠한가. 일부만이 지재권법을 익히고 있으며, 또 일부만이 기술/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 세 가지 소양을 다 가지고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다. 설령 이 세 가지 소양을 다 가지고 있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정도의 소양일 뿐, 오로지 특허 등의 지재권 분야 한 우물만 파온 변리사의 소양에 비할 바가 아니다. 가령, 특허출원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특허 청구범위 한번 작성해 본 적이 없는 변호사가 어찌 특허 청구범위의 단어 하나에 소송의 승패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오묘한 이치를 가늠할 수 있으랴.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찌된 이유에선지 변호사만이 지재권 사건에 소송대리를 해야 한다고 억지를 쓴다.

### 다음으로, 네 번째 객관적 사실.

많은 선진국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



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전쟁터에서 우리나라는 팔다리를 자른 채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위기는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싸울 무기는 형편 없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찌된 이유에선지 무기를

근대 특허제도의 발상지인 영국은 변호사와 함께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한다. 일본은 원래 변리사법 자체에 변리사의 지재권 관련 소송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2000년대 초에 법률소비자들의 요청과 국가경쟁력을 고려해 변호사가 있는 사건이라면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즉, 규정에도 없던 것을 만들어 주었다) 중국은 과연 세계2위의 경제 대국답다. 변리사 단독으로 지재권 관련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국은 제도가 다소 다르다. 일반변호사와 구별되는 특허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변호사들 대부분은 과학기술을 전공으로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은 그만큼 지재권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찌된 이유에선지 변호사만이 지재권 사건에 소송대리를 한다.

### 다음으로, 다섯 번째 객관적 사실.

최근들어 지재권 관련 소송이 전세계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익을 좌지우지할 정도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일련의 피튀기는 특허소송소식, 구글이 모토로라의 특허를 무려 14조에 매수했다는 소식, 특허괴물의 체계적인 전방위 공격 등은 까딱하다가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는 전쟁터와 같은 지재권 분쟁의 현 주

를 지니지 않은 변호사만 특허전쟁터에 내보내려 한다.

종합해 보면 앞서 살펴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실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직접 사실이다. 다음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실은 솔직히 말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의 당위성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의 정황, 분위기, 환경 등을 참조함으로써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참고 사실, 즉 소송대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리로 충분하다. 여기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실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의 당위성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까지는 아니라고 말한 이유는,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의 하나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다른 국가의 정당하지 않은 예를 들먹이면서까지 무리하게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주장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고, 아무리 지재권 소송이 피튀기는 양상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변리사보다 변호사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무리하게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주장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하게 객관적인 사실 모두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의 당위성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 자체만으로 판단할 때 논점은 간명해지고 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한 결론은 쉽게 끄집어 낼 수 있다.

변리사들은 이와 같은 다섯 가지의 객관적 사실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에 머지 않아 현재와 같은 절망스런 상황이 바뀔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그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어떤 노력

일까? 변리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엄연한 단독 소송대리권을 변리사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변호사와의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는 변리사-변호사 공

동소송대리의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변리사는 바보 같을 정도로 심하게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그냥 공동소송대리가 아니었다. 말이 공동소송대리지 참으로 굴욕적인 공동소송대리에까지 물러서며 타협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굴욕적 공동소송대리의 실체가 무엇인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한하여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야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변리사로서는 법에 의해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그야말로 한심할 정도로 거의 다 내던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굴욕적인 공동소송대리안을 담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17대 국회에서부터 7년째 잠잔다. 대한변협에서는 절대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해서도 안된다고 말한다. 변리사법을 굴욕적으로 개악하면서까지 타협점을 찾으려는 데도 이조차 매몰차게 드러뵈었을 때의 심정? 그야말로 참담하다.

어떤 일방이 다른 일방을 무참히 드러뵈을 때에는 드러뵈는 행위에 대해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만한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정당성이란 것이 변호사를 제외한 국민 어느 누구 하나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것이 정의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하지

만, 이것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수 많은 객관적 사실들이 정반대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어찌된 이유에서 변호사만이 지재권 관련 소송대리권을 인정 받고 있는가! 이토록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힘이 국민 대다수를 짓누를 정도로 강하디 강하단 말인가! 아니면, 수많은 각계각층의 소중한 염원과 우리들의 바보 같을 정도로 과한 노력이 아직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에 턱없이 부족하단 말인가!

시간이 없다. 어서 객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불합리 속에서 그들이 용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솔직히 용단이랄 것도 없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된다.

2011. 9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그 의미와 대응



김 흥 기  
지식산업센터 INNO 대표

오는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된다. 지난 2003년 처음 입법 논의가 시작된 이래 8년의 산고 끝에 2011년 3월 제정되었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수집·이용할 경우에 정보주체(고객)의 동의 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며, 회원탈퇴 등 처리목적이 달성된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만 한다.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동창회, 부동산 중개소, 소핑센터, 택배사, 여행사, 휴대폰 대리점, 비디오 대리점, 변리사사무소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350만 사업자가 적용대상이다.

이는 9월 30일부터는 국내의 거의 모든 기업과 단체가 새로운 사업 환경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종래 정보보호의 대상에 머물렀던 개인과 단체도 동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식되어 법적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동호회 회원명부를 수집·관리하는 개인 경우처럼 비록 영리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하는 개인정보(수기문서 포함)가 유출되어 피해를 야기하게 되면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적용대상과 적용범위가 매우 큰 반면 아직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그 의미와 대응방안을 살펴보려 한다.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의 신상·이력·재산 등 중요한 정보 도용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각종 유출 사고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지운다.

지난 2010년 개인정보 침해신고 총 54,382건 중 법 적용이 제외된 사업자의 비율이 73.7%(40,431건)로 법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신고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제 9월부터는 이런 영역에도 법이 적용될 것이다.

그간 국내의 현실을 보면,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관행에 익숙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식별정보(PID)뿐 아니라 개인의 정치성향 등 개인들이 드러내기 꺼려하는 정보까지도 쉽게 수집해왔음이 사실이다.

이렇듯 개인정보를 수집해놓곤 농협과 네이트 해킹과 전산망마비, 한국엡손의 고객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불법수집 혐의로 검·경이 수사 중이거나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개인들은 해킹 사고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어 후속피해를 볼 우려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정보가 유출된 개인 당사자들에게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는 보도를 듣지 못했다.

동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여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처리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타법률에 의해 처리가 허용된 경우 및 공공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처리가 가능하다.

이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폐기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과 절차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개인정보최고책임자 아래 독립된 정보관리부서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명확한 방침이 기업조직과 활동 전반에 전파되어 적절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민간사업자·공공기관 포함)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신고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권리침해의 증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의 도입 등으로 인해 법적 의무 준수를 게을리 한 기업은 상당한 피해를 감

수해야 한다. 반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보안사고가 보안업무 종사자의 허술한 관리에서 비롯되므로 이들의 보안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고객들의 신뢰가 지속되기 어렵다. 기업의 평판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고객이 등 돌린 기업을 생각할 수 있는가? 기업은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다. 기업은 사회로부터 고객과 자원을 공급받고 사회는 기업으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는다. 기업은 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지속가능하다. 개인정보 수집에 보다 주의하고, 보호에 만전을 다하는 투자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다. 기업이 있어 고객과 종업원과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사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수에게 비슷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단체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렇듯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집안 단속은 집주인이 해야 하듯, 개인정보보호는 그 정보주인이 잘 해야 함이 마땅하다.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는 결국 정보주체이기 때문이다. 경품·이벤트 행사, 포인트 적립 등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해야만 한다.

또한 이제 부터는 개인들도 자신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잘못 다루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근경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2011. 9 |



# 씨애틀에서 만난 여름보다 뜨거운 IP 연수의 현장

## 미국, 잠들지 않은 IP강국

특허분야의 전문인력은 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때문에 한번 관계를 맺으면 이후에도 상호의 유익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해외 연수를 고민하는 사람이나 기업이라면, 분명 이러한 다양한 효과를 생각하고, 그 효율성을 기능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 간략하나마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태 원

한국발명진흥회 운영지원팀 계장

### 지식재산 연수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다양한 여름강좌들이 개설이 되는 것은 IP분야라고 다르지 않다. 특히 새로운 판례라도 나오게 되면, 기업은 기업대로 새로운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한 기업에 특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로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제공하고자 분주해진다. 당장은 새로운 판례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사항이 없더라도, 기업들은 분명 경쟁사의 특허전략의 변화를 예감하고 직원들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특허요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예산과 체계가 잡힌 기업이라면, 해마다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해외에 수시로 출원을 하고, 해외 경쟁업체와의 분쟁을 겪어 본 기업이라면 거래하는 로펌에서 운영하는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짜게 되겠지만, 그에 앞서 전반적인 미국의 특허제도와 판례동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조금은 일반적인 사항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하절기에 운영되는 다양한 IP 연수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은 대체로 2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볼 수 있는데, 교육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연수 프로그램과 로펌이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명 이 둘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IP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대체로 대학의 로스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로스쿨 출신의 변리사와 변호사들이 주변 지역의 로펌과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



그림1. 씨애틀의 상징과도 같은 Pike Place Market을 알리는 네온보드

인근 저명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전문 변리사나 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대학으로부터 교수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으니만큼 각각은 교육내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대등소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양쪽 다 일정 정도는 로비를 위한 활동이기도 해서,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기도 하다.

고, 로스쿨에서 실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교수진 등의 풍부하고 다양한 교수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큰 매력 있다. 반면, 로펌에서 운영하는 IP 연수 프로그램은 보다 전문화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로스쿨의 프로그램들이 로스쿨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흐름에 맞춰 외부의 로펌 변리사와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하여, 로펌에서는 미국의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강의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비슷하지만 해당 로펌의 전문성을 내세우는 내용과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전략을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사교모임이나 교류활동도 로스쿨 보다는 로펌 쪽이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정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미국의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에 보다 치중한다면 로스쿨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되고, 특정 로펌에서 보다 전략적인 내용까지를 배우고 싶다면 로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이 두가지의 교육형태가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로스쿨 프로그램에도 다양한 사교활동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펌의 전문가들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로펌의 프로그램도



그림2. CASIP 연수가 진행된 워싱턴 대학교의 로스쿨 건물

과정명	소재지	운영기관	교육내용(기간)
Patent & IP Law Summer Institute	미국 워싱턴주 씨애틀	CASIP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분야별 특허출원, 소송실무 (3주: 7.14~29)
Summer Patent Seminar	미국 버지니아주 워싱턴 D.C 근교	BSKB(로펌)	미국IP분야 실제 사례 및 특허동향 (4주: 6.11~7.1)

대표적인 IP Summer School의 비교표(CASIP vs. BSKB)

### 로스쿨 기반의 IP 연수 프로그램 : CASIP

이번 글을 통해서서는 대표적인 IP Summer School 프로그램 중 로스쿨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연수프로그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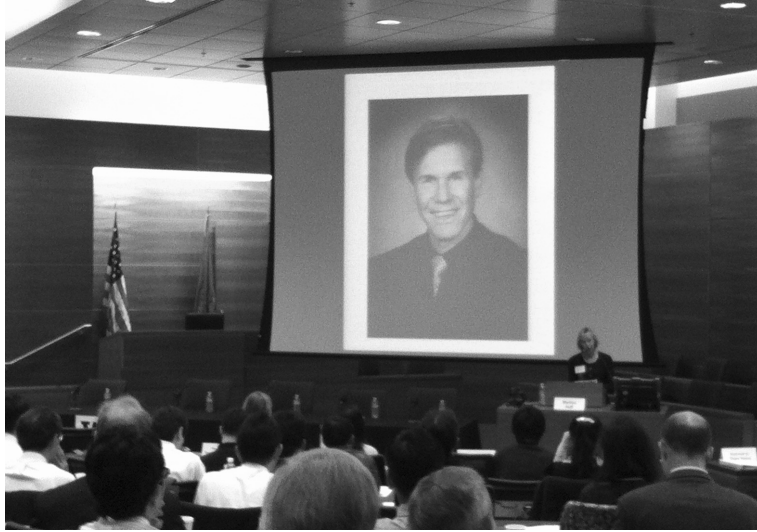


그림3. CASRIP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인 Randall Rader의 지원과 참여를 자랑으로 하고 있다.

소개하고자 한다. 줄여서 CASRIP(Center for Advanced Study & Research on Intellectual Property)라고 부르는 워싱턴 주 씨애틀에 소재한 워싱턴 대학교의 IP연구교육기관의 2011 Patent & IP Law Summer Institute가 그것이다.

CASRIP이 소재한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sup>1)</sup>은 미서부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북미 북서부만의 명문이 아닌 미국 전체로 봐도 명문 수준이다. 한국인 유학생이 많아 우리나라에도 제법 잘 알려진 학교인데, 현재까지 노벨상 수상자만 12명, 풀리처 상 수상자는 2명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이 대학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하는 대학들을 모두 합쳐도, 이 한 캠퍼스의 업적을 앞서지 못한다는 점은 참으로 서글프다.

워싱턴 대학교의 로스쿨(School of Law)은 미국 내 로스쿨 랭킹으로는 30위권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 물론, IP 법률 분야 역시 로스쿨의 위상을 올려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대학의 장점은 특허에 민감한 기업들이 미국 북서부에 기틀을 잡고 있으며, 아시아권으로의 진출이 용이한 교두보로 활

용할 수 있는 등의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미국 내 로스쿨의 랭킹이라는 것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랭킹의 위치로 교육의 질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 쉽게 말하면, IP 관련 여름 강좌를 듣는 데에는 아무런 흠이나 결격사유도 없다는 뜻이다.

### IP Summer Institute의 개요 및 참가자

CASRIP의 여름학기 강좌는 2주간의 빡빡한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출원, 특허소송, 기술 라이선싱과 매니지먼트 등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미국 법제도와 소송제도 등에 대한 특허과정 전체를 다룬다. 2주 동안에 특허과정 전체를 다룬다는 것은 물론 어불성설이다. 전체라기보다는 전반을 다룬다고 할 법하지만, 실제로 IP 관련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허과정 전체를 다룬다는 말도 분명 성립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강좌 자체의 치밀하고 세밀함도 있지만, 이 강좌에 참여하는 대상이 특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이들로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참가자들의 면면을 보면, 대개 비영어권 국가의 지재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대부분이다. 2011년 참여자는 일본, 대만, 한국 등의 특허청 소속 심사관과 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와 임직원은 물론이고, 체코 지방법원 판사, 인도의 로스쿨 학생과 석유에너지를 전공하는 대학교수들, 멕시코에서 온 대학교수,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기관 임원, 독일 바이엘 연구소 연구원, 카자흐스탄의 교육연구원 그리고 우간다의 국제법연구소 연구원까

1) 2010년 기준 문리과대학, 건축·도시계획대학, 경영대학, 치과대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환경대학, 정보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해양·어업과학대학, 약학대학, 대니얼 J.에번스 공공업무대학, 공중보건대학, 사회사업대학,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0여 개의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진행한다. 홈페이지 : [www.washington.edu](http://www.washington.edu)

지로 총 59명의 면면이 모두 다채로웠다.

여기에 추가로 8명의 연구생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TA(Teaching Assistant)의 역할을 해주었다. 수업 후 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수업 중에 수강자들이 충분히 질문하지 못한 바들을 강의자에게 질문하고, 수업이 종료된 후에는 수강자 그룹을 지어 자신이 맡은 수강자들과의 팀티칭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도움을 잘 활용하면, 수업에서 이해 못한 점들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정보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들 TA 역시 영미권 출신의 연구생들은 아니다. 일부는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UW(University of Washington의 줄임.) 로스쿨에서 IP를 전공하게 된 이도 있고, 실무경험을 가진 이들 중 이론적인 측면의 연구를 깊게 하고자 참여하는 이들도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paralegal로 근무하면서 학업을 수행하는 이들도 있었다. 수강자들보다는 책임이 막중한 이들이기에 수업의 진지한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이었다.

### IP Summer Institute의 강좌 구성

Mon	Tue	Wed	Thu	Fri	Sat
			14	15	16
			Legal English, US litigation Overview,	US Trademark US Trade Secret US Copyright	
18	19	20	21	22	23
Patent Basics - Patentability - Patent Eligibility	Patent Basics - Claim interpretation Patent Litigation	US Patent Prosecution - Application Drafting	US Patent Prosecution - Office Action, Examiner Interview	High Technology Protection Summit	
25	26	27	28	29	
1. Advanced Patent Prosecution (트랙별 강좌운영, 택1)					
Drug Dispute	Rule of Priority	Continuation Strategies	Appeal at USPTO	Office Action Strategies	
2. IP Enforcement & Management (트랙별 강좌운영, 택1)					
EU Practice	EU Patent Licensing	International Litigation Strategies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IP-Entrepreneurship	Patent Evaluation	
3. EU & US IP Enforcement (트랙별 강좌운영, 택1)					
EU Practice	EU Patent Licensing	International Litigation Strategies	International Enforcement	International Negotiation Strategies	

CASRIIP Summer Institute 강좌(간략)일람표

###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는 첫째 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강좌는 특허과정 전체를 다룬다. 그래서 특허제도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기능이 있으며, 그러한 권능은 헌법에서 연원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 성립의 역사를 배우는 것 같은 기분으로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어서 미국의 소송구조와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본격적인 특허제도에 관한 수업의 워밍업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특허제도와는 다른 상표법과 영업비밀, 저작권 등에 관한 제반 제도를 설명함으로써, 첫째 주의 이틀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틀간의 강의에서 가장 주안점을 둘 점은 법률 용어와 우리법과는 다른 영미법의 체계를 다소나마 이해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미국 특허소송에 관한 지식이 있다면 향후 진행될 강의를 강의로서가 아닌 토론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강의자들의 이야기들을 오직 학생입장에서만 들을 수밖에 없다. CASRIIP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는 실제로도 상당부분이 강의라기보다는 분야별로 강점을 가진 로펌들의 사업설명의 자리와 같이 내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특허분야의 전체 핵심사항을 다루는 둘째 주

Patentability - 특허 요건은 우리의 특허법에서 명시한 바와 결코 다르지 않다. 하지만, 미국은 어디까지나 성문법이 아닌 판례와 법률사례로 법이 성립되는 불문법 국가다. 그래서 우리 법처럼 산업상이용가능성과 같은 내용도 그리 간단한 법리가 아닌 듯 비춰진다. 분명 법률상의 논리와 이론들은 현실의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법으로서의 생명을 갖는 미국이기에, 문언적인 의미뿐만 아니

라, 관련된 사건(case)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특허법의 기본에 대해 다루지는 강의는 이틀에 걸쳐 진행이 되며, 항상 Case book을 인용하며 진행한다는 점이 특색이다. 특허법 기본은 특허법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First-To-Invent(발명우선주의)와 Statutory Bars(불특허 요건), Claim Interpretation(청구항의 해석)이 다루지며, 미국 특허청 소속 심사관으로부터 Patent Eligibility(특허의 성립성)와 Utility(이용가능성), Novelty(신규성), Nonobviousness & Disclosure(비자명성과 공개) 등의 강의를 듣게 된다. 미국에서도 현재는 발명우선주의와 등록우선주의 간의 다양한 논의가 다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조만간 어떠한 변화가 있으리라는 귀뜸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특허소송 중 선출원 전략과 변론, 그리고 미국의 소송 진행 단계인 pre-discovery, motion, trial에 대한 강의로 함께 진행이 되는데, 우리의 특허법 교육이 소송을 특허법 이론 교육 이후에 진행하는 것과는 달랐다. 분명 법률은 특허 특허법은 소송과 분쟁을 염두에 두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법의 활용이 미국에서 그리고 특허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특허의 출원 절차와 전략에 관한 강의도 둘째 주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특허출원서의 작성(Patent Application

Drafting)과 심사결과 통지(Office Action)와 심사관 면담(Examiner Interview)에 대한 내용이 이어진다.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학습과 논의가 이루어져서, 출원서의 청구항 작성에 대한 논의는 익숙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구항의 문언적 범위를 어떻게 하면 넓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례들을 설명해준다. 언어의 차이로 인해 과연 어떠한 표현이 보다 광의의 표현인지를 모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분명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compose와 be made up of를 같은 의미로 배우는 한국의 학교 영어환경에서는 이러한 학습과 논의의 시간이 필수라고 생각된다.

특허소송과 관련된 강의는 침해 구제(Infringement Remedies) 방안에 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단지 침해구제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내용의 강의가 아니다. 물론 소송 이외의 ADR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중요한 소송가액의 산정과 같은 내용이 보다 핵심주제로 다루어진다. 우리의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과 미국의 법원이 생각하는 손해액은 분명 다른 범위와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현실적인 손해만을 소송가액으로 삼을 수 있느냐와 어느 정도는 미래적인 가치도 소송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 대상이 되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였다.

###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특허이슈를 다루는 셋째 주

셋째 주 동안의 강의 일정은 3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이 된다. 지난 7일간의 강의를 통해 충분히 미국의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드밴스 과정으로서 보다 실무적인 사항과 국제법 관련 사항 그리고 기업가 입장에서 특허제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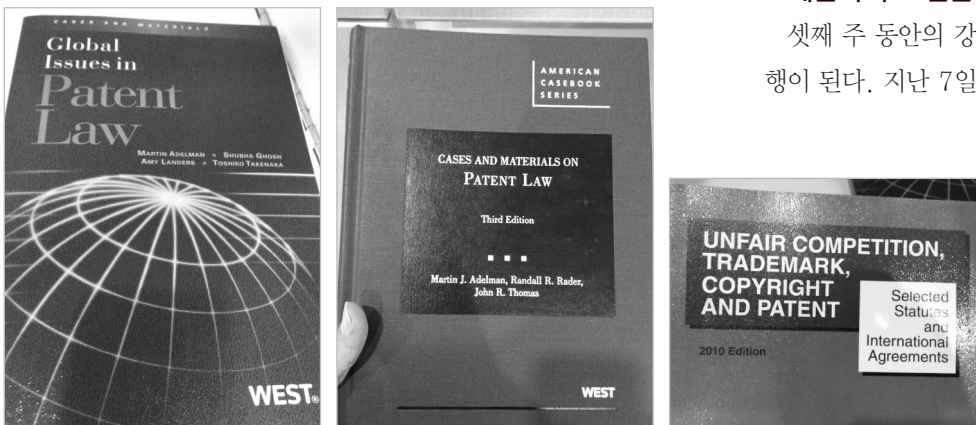


그림4. 강의에 사용된 기본 교재들

수강자가 기업의 특허팀에서 출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거나 해외출원을 담당하는 변리사라면, Advanced Patent Prosecution Track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만일 기업의 경영자 내지는 특허라이센싱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특허권의 행사와 보호 그리고 특허매니지먼트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는 IP Enforcement and Management Track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 등 해외에서의 특허권의 행사와 보호에 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EU and US IP Enforcement Track을 선택하면 된다.

이 세 개의 강의가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일부 중첩되는 사항들이 있어, 혼합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각각의 트랙의 독특한 내용은 3개의 강의실에서 동시 진행되기도 하지만, 미국 내에서의 비교법 측면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공통강의가 진행된다. 미국이 오늘날 국제 경제체제 하에서의 분쟁을 다루는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특허법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우리기업과 미국기업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우리기업과 일본기업이 특허분쟁을 할 때에도 미국 법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해외의 어떤 기업과의 분쟁이라도 그 물품과 기술이 미국에서 생산, 판매, 수출되거나, 미국 기업이 연관된 기술이라면 미국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글로벌 기업이라면 미국에 사무소를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일이 빈번하기에, 비교법 관점에서의 현재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이슈들은 귀담아 듣기에 부족함 없는 내용이다.

각 트랙의 특징이라면,

Advanced Patent Prosecution Track에서는 Rule of Priority와 Continuation Strategies, Appeal at USPTO, Reexamination & Reissue 그리고 Office Action Strategies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그리고 Patent Drafting과 관련해서는 전기/기계, 화학/생명공학으로 세분화되어 명세서 구성 및 작성 전략이 다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산업분야에서 어떤 표현이 청구항에 사용되어야 하는 지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의 실험과 클레임의 구현과 그 입증에 위한 사항들을 다루게 된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의약분쟁(Drug Dispute)과 바이오기술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강의자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수강자의 토의 수준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도의 논의도 가능하다.

IP Enforcement and Management Track에서는 특허 실시권계약(Licensing)과 국내에서도 그 논의의 추이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학기술이전(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특허를 통해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자 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을 담은 IP 창업기업(IP Entrepreneurship)에 대한 강의를 주목해 볼 수 있다. 특허평가(Patent Evaluation)와 관련된 강의도 이 트랙에서



그림5. CASRIP의 강의자가 소속되어 있는 한 로펌이 주재한 리셉션에서 환영의 말을 하고 있는 주최자. 씨애틀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콜럼비아 센터에 사무실이 있다. 연수 과정 중에 서너 차례 진행되는 로펌 주재의 리셉션을 통해 로펌을 소개하고 수강자들 간 교류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다루어지고 있는데, 특허평가는 단순히 평가시스템이나 평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외에 특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로 마무리 되었다.

세 번째 EU and US IP Enforcement Track은 독일의 직무발명 시스템(German Employee Invention System)과 EU의 법원의 구조와 재판권(EU Court System and Jurisdiction)을 다룬 강의를 특징적이었다. 특별히 WIPO의 PCT출원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PCT출원의 활발한 이용을 요청하는 내용의 강의가 이루어진 점에서는 이제는 특허출원 서비스도 상품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특허제도를 이용하는 기업과 발명자를 위해 분명 WIPO뿐만 아니라, 각국의 특허청은 보다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특허제도 역시 하나의 서비스로 자각하고, 이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특허의 양적 팽창을 위한 정책의 수고에 앞서야 할 것이다.

### 빠뜨릴 수 없는 토론의 현장,

#### High Technology Protection Summit

CASRIP이 마련한 IP 연수 일정 중에는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포함되어 있다. 연수의 두 번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의 주말 양일간 진행되는 이 세미나는 새롭게 대두되는 기술에 대한 특허동향과 특허보호의 방향설정 그리고 해외 각국 법원과 특허청의 역할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빌스키 사건 이후 특허요건과 KSR 사건 이후의 비자명성과 구제방안(Post Bilski Patent Eligibility, Post KSR Nonobviousness and Remedies), Ariad 사건에 대한 재해석(Rethinking Ariad, Infringement Issues and Inequitable Conduct), 미국의 특허법리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에 대한 고찰(Reflections on Scholarly Analysis of Contributions to U.S. Patent



그림6. 로스쿨 내에 계단 강의장을 가득 메운 세미나 참석자들

Jurisprudence)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논의를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법원에서의 미국 법리의 역할과 대학과 기업 간의 특허소유문제, 기술 라이선싱과 경쟁 원리 측면에서 여러 패널들을 통한 토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술적이고 실무적인 논의의 마무리는 역시 미국답게 특허법에서의 윤리적 문제(Ethical Issues in Patent Law)로 짓는다.<sup>2)</sup>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들은 대개 미국 내 저명 로스쿨 교수를 비롯하여, 특허법원 판사, 일본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 독일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미국 대형 로펌의 중국법인 소속 변리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특허전문가들이 해외에서 활약하는 바를 눈에 띄게 볼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특허 강국이라는 말은 단순히 특허의 출원량으로만 평가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며 특허4강다운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규모야 어떻든 우리나라의 특허전문가들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날들을 기다려 본다.

### 마치며... (Seattle이라서 좋은 점)

씨애틀 하면 우리는 어느 덧 스타벅스로 대변되는 커피 산업을 생각하게 된다. 커피 로스팅 회사로 시작한 스타벅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곳도 씨애틀이고, 스타벅스가 인수하고 말았지만, 아련한 기억 속에

있는 은막의 스타 신영균 씨가 한 때 사업주로 운영했던 스타벅스보다 1년 먼저 사업을 시작한 씨애틀즈 베스트 커피(Seattle's Best Coffee)의 고향이기도 하다. 씨애틀즈는 다른 미국의 거대도시들과 비교해서 분명 작은 도시이다. 그래서 딱히 커피 이외에는 대다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씨애틀즈의 잠 못 이루는 밤' 정도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실은 혁신과 기업의 도시이기도 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씨애틀즈에 등지를 틀고 있으며, 스페이스 니들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수직 낙하할 법한 곳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설립한 빌 게이츠 재단 건물이 있다. 시카고나 뉴욕의 마천루에 비하면 나지막하다고 할 법하지만, 씨애틀즈에 본사를 갖고 있는 아마존닷컴이 자리한 콜롬비아 타워는 미서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뿐만 아니다. 자랑스런 한국의 날개 대한항공의 주력 여객기 시리즈를 만들어 주고 있는 보잉(Boeing)도 씨애틀즈에 본사가 있다.

관심만 충분하다면, CASRIP의 네트워크를 잘만 활용하면 이들 기업의 특허팀 인력들과 미팅을 하거나, 본사 캠퍼스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혹은 이들 글로벌 기업의 특허업무를 의뢰받고 있는 혹은 이들을 상대해 본 로펌 소속 변호사와 변리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분명 마련되어 있다. 씨애틀즈의 선선한 날씨와 따사로운 햇살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에 수업 외 활동을 레저와 관광으로 채우지 않고 귀한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씨애틀즈에 보금자리를 튼 글로벌 기업들을 알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 보기 바란다.

IP 연수프로그램은 대상별로 다양하겠지만, 단순히 학생 대상의 교육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허에 대한 학습과 다양한 로펌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특허분야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이들과의 만남과 교류는 무엇보다 강력한 참가 이유가 된다. 특히, 어느 분야에서나 마



그림7. IP연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또 다른 교류의 장, 야구장!

찬가지겠지만, 특허분야의 전문인력은 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때문에 한번 관계를 맺으면 이후에도 상호의 유익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해외 연수를 고민하는 사람이나 기업이라면 분명 이러한 다양한 효과를 생각하고, 그 효율성을 기능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 간략하나마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1. 9 |



그림8. 각국의 언어도 '환영'을 표기한 유리 난간의 이 건물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Executive Briefing Center. Microsoft Future Vision 이라는 동영상 통해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기술이 시연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2) 이 논의는 Therasense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불공정행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에서 국내외적으로 행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특허심사 중에 사실에 해당하는 사항을 USPTO에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특허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내용으로, 윤리적 측면이 결합된 데다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그 효력과 파장이 작지 않다고 본다.

## 제네바 WIPO 여름학교 참가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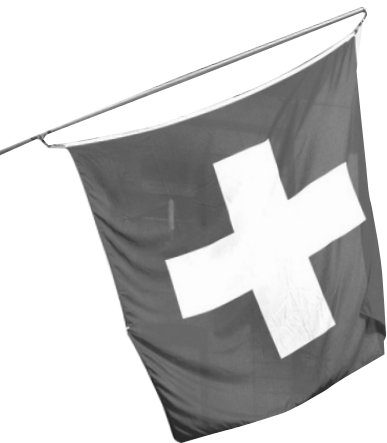
박 소 휘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 박사과정

2011년 봄, 고려대학 국제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으며 연구 주제를 선택해야 했던 시점에서 수강하게 된 ‘Intellectual Property(IP) for Business’ 수업은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훌륭한 지표가 되어 주었다. 수업을 들으면서 기존에 잘 모르고 있었던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게 되었고,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재산권이 함의하고 있는 기술개발을 비롯한 인간의 지적 창작물의 권리화와 보호, 활용이라는 측면은 앞으로 기업의 영속성과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 나의 박사과정 연구 주제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런 나에게 WIPO 여름학교는 국제적 시각에서, 지식재산권의 모든 분야를,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름학교 강의는 기술 이전 라이선싱 시뮬레이션, 대학 기술이전 담당자가 부딪혔던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상표분쟁 해결 방안과 같이 지식재산권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수업들, 공공보건, 전통지식, 유전자원, 녹색기술 등 국제 규범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 소개, 그리고 WIPO가 담당하고 있는 국제적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과 도메인 분쟁 해결 절차를 공부하는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강의 외에도 2번의 리셉션을 통한 참가자 간 교류의 시간, 유엔 견학, WIPO 녹색 기술 관련 회의 참석 일정과 유엔 주재 미(美) 외교관, WIPO 여름학교 출신 선배들, 그리고 제네바 대학 법학대학원 입학 담당자와의 만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제네바 법과대학과 공동 주체하여 한 주 동안 제네바 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외교관을 꿈꾸는 나에게 총 35개국에서 제네바에 모인 50명의



참가자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값진 경험이었다. 저작권에 특히 관심이 있는 영화 감독, 가족이 운영하는 특허 등록 사업을 돕고 싶은 대학생,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을 해오던 학생, 특허청 입사를 준비하는 학생, 지식재산권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오던 학생, 그리고 나처럼 박사 연구 분야로 관련 담당자들과의 만남이 필요한 학생들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2주 동안 그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는 연습만으로도 외교관이 된 듯한 느낌을 안겨주었다.



다. 첫 날에는 Rep. of Korea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평창 올림픽 유치 성공을 축하해 주고 한국말도 조금씩하고 한국에 대해 물어보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왔다. 낯설기만 했던 친구들이 마지막 날에는 포옹을 나눌 만큼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기도 했다.

나에게 제네바 여름학교는, 국제 협력을 위한 국제 기구와 회원국 외교관들의 노력과 수고를 국제기구의 심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외교관의 꿈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박사 과정 동안 연구하게 될

기술 진보 관리 분야에 대한 자신감도 안겨 준 황금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게다가 꿈을 나누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들도 선물 해주었다. WIPO 여름학교 참가를 통해 앞으로 지식 경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신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더불어 앞으로 이러한 국제 지재권 교육을 통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눈을 뜨고, WIPO 여름학교와 같은 훌륭한 해외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을 이끌어

나가는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워싱턴 D.C. WIPO 여름학교 소감문



박 용  
경북대학교

**특** 허법 수업시간에 국제 지재산권 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되면서 한국발 명진흥회 담당자가 WIPO 여름학교(WIPO Summer School on Intellectual Property(IP))에 대해 소개를 해주실 때만 해도 사실 나는 내가 WIPO 여름학교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영어 실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여름에 있을 LEET(법학적성시험) 일정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률가가 되어야지”라는 막연한 비전만 가지고 있었던 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다는 WIPO 여름학교가 나에게 너무 버거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법을 공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나의 관심은 더욱 커져갔고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공부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내 진로의 방향으로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WIPO 여름학교에 참가할 자격이 내게도 주어졌다. 전 세계 특허의 심장인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WIPO 여름학교에 참여한다는 것이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인이 되겠다는 나의 비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담당 교수님의 말씀에 나는 부푼 꿈을 안고 워싱턴 D.C.로 출발하게 되었다.

첫날,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특허청(USPTO)에 도착했을 때 강의실 책상 위에 놓인 ‘박용, KOREA’ 라고 쓰인 이름표를 보며 내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워싱턴에서 돌아 온지 꽤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때의 가슴 뭉클함은 잊을 수가 없다. USPTO에서 연수를 받는 동안 많은 강사들이 지식재산권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며, 그 예로써 우리나라를 들곤 하였다. 뿐만 아니라 WIPO 여름학교 참가자들 중에서도

평소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환경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는 참가자들을 꽤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USPTO에서 진행된 WIPO 여름학교는 WIPO, USPTO 등 권위 있는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온 나와 유주희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각국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연구원, 관련 공무원 등인 실무자들이었다. 대부분의 수업시간에는 강의 내용에 대한 참가자들의 질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며, 강사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었다. 강의 내용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철학적 기초나 법적인 논리보다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업의 수익창출 방법 혹은 그를 기업의 측면에서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해 내는 과정 등 지식재산의 활용 및 경제적인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었다. 강의시간 중 자유로운 질문과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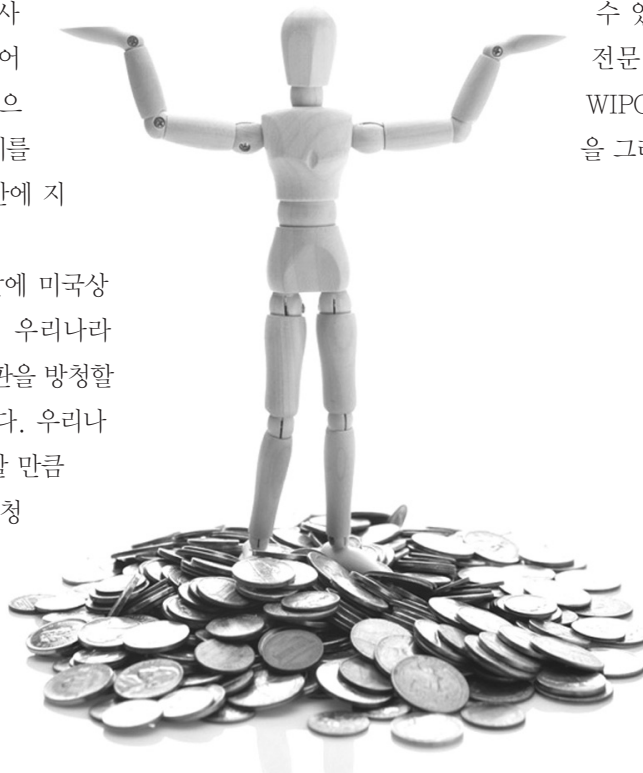
드백을 통하여 참가자들과 강사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고, 참가자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조별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참가자들 간에 지식공유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연수 1주차 마지막 날에 미국상소법원을 견학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기업 삼성이 피고인인 특허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도 직원을 파견할 만큼 중요한 소송이었다. 재판을 방청하는 동안 굉장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특허 소송이 실제로 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

다니... 정말 감격적이었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단순히 기업의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와 이익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미래가 될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미래를 내다 본 투자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고 싶다.

WIPO 여름학교를 참가하면서 내가 얻게 된 가장 큰 소득은 나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찾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법학을 공부하면서 막연하게 법률가가 되겠다는 꿈만 꾸고 있었다. 법대에 왔으니 무언가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 지재권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WIPO 여름학교에 참가하면서 나는 특허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고, 세계 속의 지식재산권을 공부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언젠가 지식재산 분야 전문 변호사가 되어 다시 한 번 WIPO 여름학교에 참가하게 될 날을 그려본다.



## 대전 WIPO 여름학교 참가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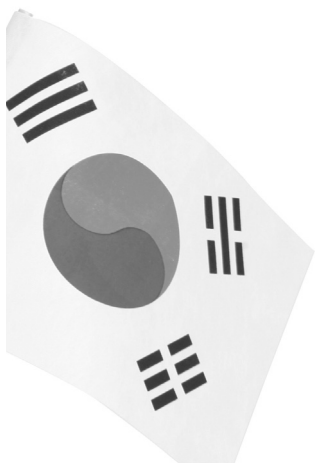
김 선 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2006년 2월, 한국과 해외 시장을 당차게 이어나갈 여성 전문 경영인을 꿈꾸며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약 5년 후인 2011년 5월,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아직은 생소한 기관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Summer School on Intellectual Property(IP)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수업을 들으러 간다니 주위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기본적인 경영학과목들을 이수한 후 1년 6개월 간의 휴학 기간 동안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에서 국제 경영학 단기과정을 수료하고, 틈틈이 한국과 미국·중국에서 인턴(다양한 시장과 관련된 마케팅 및 무역 영역)을 하며 경영 분야와 법 분야의 필연적 연관성, 세계 시장에서 Intellectual Property Trade나 IP Management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내게 WIPO 여름학교는 당연하고 가슴 벅찬 선택이었다.

긴 휴학 기간 후 숙명여자대학에 복학하여 전공의 심화학습과 법학 부전공을 시작하고, 네덜란드의 Leiden 법과대학에서 교환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며, 경영전략으로서의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이를 구성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학부 커리큘럼상 두 영역을 더욱 밀접히 연결시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기대할 수 없었다. IP와 법, 그리고 경영에 대한 갈증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숙명여대 법학과 문선영 교수님의 추천을 통해 WIPO 여름학교에 대해 알게 되었고, 경영과 지식재산권의 연결고리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발명진흥회를 통해 지원하게 되었다.

기대했던 대로 약 30여 개의 토픽에 이르던 WIPO 여름학교 강의는 IP의 법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 평소 도덕적 측면과



비즈니스 마인드적인 측면으로 대립하여 논쟁을 벌이곤 했던 개발도상국의 전통치료요법을 둘러싼 선진국 제약회사와 제3세계의 대립에 관한 주제를 강제실시권을 중심으로 한, IP Law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유익했던 'Pharmaceutical Industry and Compulsory Licensing', 개인적 관심사였던 IP를 활용한 경쟁전략에 대해서 다룬 'IP, Entrepreneurship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라는 강의,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으나 전세계 어디서나 이슈화가 되고 있는 'Green Technology'를 IP적 측면에서 다룬 강의 등 여름학교에서 다뤄졌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흥미로웠다. 중국의 상하이와 태국에서 활동하는 프랑스의 IP 변호사님이신 Franck Fopugeres의 'Branding' 강의와 동경대학교에서 기술경영학 과목을 가르치시는 Soga Kenichi 교수님의 저작권법에 관한 일련의 강의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전 준비과정까지 한 순간도 빼놓지 않고 즐겼기에 특히나 기억에 남는다.

'Branding' 수업의 경우, Franck Fopugeres 변호사님이 중국과 태국에서 실제 맡았던 사례를 통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신제품을 브랜딩할 때 발생 가능하나 예상이 어려운 IP와 관련 법적 분쟁 요소들과, 그로 인한 회사의 피해, 또 이를 막기 위한 방지책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평소 가장 갈등을 느꼈던 부분이라 그런지 수업시간 내내 물을 마시지 않아도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내내 '나도 언젠가는 교수님과 같이 IP법의 경영적 활용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 한국과 세계를, 세계와 아시아를 이어내야지' 하는 꿈을 키웠다. 사실 이 수업의 경우 일주일 전부터 담당 강사님이 팀 과제를 주셔서, IP분야에 필요한 팀워크, 그리고 열정과 도전정신을 먼저 배울 수 있었다. 팀 과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신차 브랜딩 전략을 짜는 것이었다. 팀원들은 적법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Branding 전략을 짜기 위해 서로 머리를 모아 며칠 밤을 지새우며 토론을



하고, 서로의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며, 더 많은 지식을 결합하여 하나의 커다란 아이디어를 탄생시켰다. 이 노력의 시간들은 마음 속 깊이 여전히 아름답게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다. 과제와 수업이 끝나고, 함께 뒤풀이에 참여하여, 더욱 가까워진 서로를 느낄 수 있었다.

Soga Kenichi 교수님께서도 WIPO 여름학교가 진행되었던 대전의 지식재산연수원에 도착하기 전 미리부터 숙제를 주셨다. 숙제는 학생과 지도 교수 간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공방에 관하여 원고측인 학생 변호인단과 피고측인 교수의 변호인단으로 나뉘어 모의재판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만만치 않았던 주제였다. 매일 밤 다른 수업의 과제들이 주어질 모의재판을 준비할 시간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았다. 한국의 로스쿨 및 법학 대학생, 변리사, 공학 전공생, 경영학 학생,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 온 변리사들로 구성된 피고인 변호팀을 맡은 우리팀은 저작권법에 대해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모두 함께 배워나간다는 생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관련 법률조항, 관할권 문제, 저작물 성격 등에 대해 리서치하고 밤새 논의하였다. 날이 밝아서야 겨우 초안이 완성되었다. 재판이 시작하자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우리측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말레이시아의 변리사님은 즉흥적으로 증인을 호출하는 기지를 발휘하였다. 결국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판사님은 피고측 승소판결을 선고하셨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판결에 이어 판사님께서 부가적으로 부족했던 법적 사실부분을 지적해주심으로써 부족했던 법률적 지식을 메울 수 있었다. 모의재판을 통해 법적 사실만을 배운 것이 아니라, 협력, 창의적 의견의 교환, 사실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접근 등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다.

모의재판 수업 때도 느꼈지만, Soga Kenichi 교수님의 수업은 다른 강사님의 수업과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마치 어항 속 물고기에게 밥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어항 구석구석 자라나 있는 이끼를 먹으며 스스로 운동하는, 보다 강한 생명력을 길러주는 듯한 강의라고 하면 교수님의 수업스타일이 조금 쉽게 이해될 것이다. 'Limitations and Exceptions of Copyright' 라는 시간에는 갑자기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굉장히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일 수 있으나, 저작권법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스무 명의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이를 주제로 후진국과 선진국으로 대변하라는 즉흥 토론 과제를 주셨다. 내가 속했던 선진국 팀은 그동안 Summer School에서 배웠던 지식을 활용하여 "후진국도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설계하여, 다양한 저작물을 보호하고, 저작자에 보상을 하여 더 나은 저작물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여, 후에 이러한 저작물의 trade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저작권법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기본적 입장을 밝혔다. 후진국 팀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비용은 후진국 국민들에게 부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접근 불가능 시, 이를 활용한 더 나은 저작권 개발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될 경우 IP 후진국으로 평생 남을 수 밖에 없다. 저작권 보호 정보나 작품들에 대해 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침해는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약 이십여 분간 논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토론을 통해 생소하고 어려운 것만 같았던 저작권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IP에 대한 기본적 지식의 습

득은 나에게 큰 발전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발전은 나의 미래에 대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로스쿨 교수님에 의해 수업이 진행된 WIPO 여름학교는 나에게 많은 조언을 해준 기회의 장이었다. 대부분 로스쿨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던 WIPO 여름학교의 학생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 지쳤을 때에도 나에게 학교 선택을, 그리고 LEET 시험과 면접 준비과정을 정성스럽게 알려주었다. 약 2주 간에 걸친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분명히 원하는지 알게 되었고, 보다 확고하게 계획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또한 내가 향할 길을 먼저 걷고 계신 감사한 분들을 통해 엄살 없이 앞으로 나아가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IP는 다양한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하게 자리하였으며, 앞으로는 더욱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진다. 그래서인지 개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WIPO 여름학교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고개를 가우뚱거리던 친구들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IP나 WIPO 여름 학교에 관하여 이것저것 하나 둘 묻는다.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요즘 어떤 TV 광고를 보면 "어떤 상품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멘트가 종종 나오곤 하는데, WIPO 여름학교도 내게는 그 상품과도 같다면 어느 정도 제대로 답을 한 걸까? WIPO 여름학교를 통해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으며, 너무나도 소중한 고든친구들,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멘토들까지 얻었다. 짧은 글재주로 내 안의 감격과 기쁨까지 모두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나의 참가 소감문이 누군가에게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가지고 국제적인 인재로 성장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 경험을 단단한 디딤돌로 삼아 로스쿨에 진학하고, 꾸준히 공부하여 훌륭한 IP 변호사, IP 전략가가 되어 좀 더 당당히 IP에 대하여 논할 수 있는 멋진 여성으로 성장할 내 모습을 그려본다. 2011. 9 |

#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발상으로 희망을 꿈꾸는 (주)엘더스 T&L

## 길게 뻗은 쇧덩어리

사람들은 철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일정한 간격과 철저한 평행을 유지한 채 곧게 뻗어 있는 두 개의 레일을 떠올린다. 육중한 기차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위를 오고 가며, 그들을 지탱하는 두 줄의 쇧덩어리는 묵묵히 버티면서 자신들의 몫을 해낸다.

레일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레일은 그냥 쪽 뻗은 길다란 쇧덩어리가 아니다.

레일은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다. 그것은 좌우로 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래위로 휘기도 한다. 때로는 균열로 인한 레일의 손상으로 열차 운행을 한동안 지연시킨다.

비가 억수같이 오던 어느 날. 문씨는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휘어진 레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논과 밭이 펼쳐진 한적한 교외를 가로지르던 철도는 비가 내리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이 몸을 뒤틀기 시작했다. 노후된

쇧덩어리가 휘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결국 레일의 수리,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긴급하게 호출이 들어왔다. 레일이 휘면 열

차 승객들의 승차감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사고가 날 우려도 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문씨는 고개를 돌려 동료들을 보았다. 그들은 우비를 걸치고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문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보통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나면 '자키'라는 공구를 이용해 차체를 들어 올린 뒤 타이어를 교체한다. 철도레일의 보수 또한 마찬가지다.

문씨와 동료들은 육중한 철도레일 보수용 자키를 가져와 휘어진 레일 밑에 끼웠다. 문씨가 자키를



작동시키자, 내부의 기어가 작동하면서 바닥에 깔려있던 철도 레일이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휘어진 선로를 곧게 편 뒤 다시 제자리에 갖다놓는 일이었다.

문씨와 동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다. 그들은 바닥에 깔려있는 자갈을 치워내고 허공으로 올라간 레일 아래로 들어갔다.

작업에 임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문씨는 그들의 얼굴 너머에 숨어있는 긴장을 단번에 알아낼 수 있었다. 문씨 역시 작업할 때는 항상 긴장으로 표정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자키 때문이었다. 얼핏 보기엔 가늘고 긴 레일이지만 뼈 속까지沁어리인 그것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레일을 보수하는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沁어리를 지탱하고 있는 자키 하나였다. 밧줄 하나에 몸을 맡기고 절벽 오르는 사람이나 철도를 보수하는 사람이나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처지였다.

다행히도 레일 보수작업은 무사히 끝났다. 문씨가 철수를 지시하자 동료들이 하나, 둘씩 레일 밑에서 몸을 빼냈다.

그런데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찢어질 듯 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막 레일에서 벗어나던 문씨의 발걸음이 순간 멈추었다. 한줄기 땀이 그의 등골을 타고 내려갔다. 문씨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부러진 곳도, 찢어진 곳도 없었다.

문씨가 고개를 돌리자 철도 레일에 손이 끼인 채 발버둥치고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삼십대 초반의 인부였다. 문씨는 얼마 전 술자리에서 막 육 개월이 지난 아기의 사진을 보여주며 싱글벙글 웃음을 짓던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누군가 사람들이 모두 피했다고 생각해 자키를 작동시켰거나, 혹은 제멋대로 움직였을 것이다. 어찌됐던 자키는 순식간에 레일을 지탱하고 있던 힘을 뺐고 누군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돌아가게 되었다.

철도를 가린 높은 방음벽 아래, 문씨는 우두커니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옆에는 얼마 전 다친 인부와 비슷한 또래의 사내가 팔을 걷어붙인 채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어떻게는 뭐. 장애인 3급 판정 받았데. 보조금이 얼마라더라...”

문씨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철도 보수업에 뛰어들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손자 재롱 볼 나이가 되었다. 이제 그도 많이 약해져 있었다. 그러던 차에 터진 사고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일을 그만 둘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자키네들, 자키는 안 만드나?”

문씨 옆의 사내는 엘더스T&L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철도와 관련된 각종 부품과 수리, 보수 공구를 만들고 있다. 시장 자체가 워낙 작다보니 50억대 매출도 올리기 힘든 작은 회사이다.

철도 분야에서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과의 의사소통이다. 그러다보니 회사의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철도 보수 현장을 찾아,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사내 또한 현장 조사차 철도를 찾은 참이었다.

“사람 잡는 자키 말고, 사람 살리는 자키 한번 만들어 봐.”

문씨가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내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겨 넣었다. 제대로 된 자키.

### 사람을 살리는 자키

회사로 돌아온 사내는 직원에게 문씨의 의견을 전했다. 기존의 기어식 자키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높낮이 조절이 용의하지 않아 갑자기 동작을 정지시키거나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면, 레일을 지탱하던 힘이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되면 손이 잘린 인부의 경우처럼,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떨어지는 레일에 깔려 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겼다.

엘더스T&L 직원들은 기존의 자키를 개량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보자는 사내의 의견에 공감했다.

철도 공구 시장은 다른 분야에 비해 협소했다. 작은 밥그릇을 놓고 몇 개 안되는 업체가 다투는 구도였고, 그러다 보니 대량 생산이나 공격적인 방식의 회사 경영은 힘들었다.

유일한 방법은 아이디어였다. 소규모 생산이라도,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독특하고 효율적인 공구를 개발해 낸다면 쓸쓸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자키를 개량하자는 의견은 괜찮은 아이디어였다. 그동안 철도업계에서는 관행처럼 기어식 자키를 사용할 뿐 그것은 안전하게 다시 만들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엘더스T&L은 대다수의 철도 공구 회사들이 그렇듯 작은 규모의 회사였다. 기술영업, 엔지니어링, 수리 보수...

업무에 따라 부서가 나누어져 있던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구분 없이 함께 업무를 진행해 나갔다.

새로운 자키의 개발 또한 전 직원의 참여와 함께 시작되었다. 기어식 자키를 개량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기존의 육중한 자키보다 가벼우면서도 안전한 자키를 만들자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재질에서부터 레일을 들어 올리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새로 고려해야 했다.

직원들은 수많은 토론을 거쳐 기어식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구조를 유압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렇게 새로운 발상의 물꼬가 트이자 곳곳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샘솟았다.

새로운 자키에 대한 디자인이 끝나고 이제는 실제로 제작을 해야 할 차례였다. 그러나 공구 제작, 판매에만 몰두했던 엘더스T&L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유압식 자키는 기존의 누구도 만들어 내지 못한 새로운 제품이었고, 공학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감수와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인하대 선박해양공학과의 그들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었다. 선박해양공학과는 조선 분야에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과로, 다방면의 공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엘더스T&L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철저한 구조해석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마침내 세밀한 도면을 만들어 냈다.

이제 장치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 아웃소싱 업체들을 정하고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시급했다. 그러나 업체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새로운 자키의 원료는, 기존 제품이 사용하던 강철이 아닌 알루미늄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알루미늄 제련 업체들은 얇은 두께만 만들어 봤을 뿐, 철도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육중한 두께는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포메탈이라는 업체가 등장하면서 직원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른 제련업체와 달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 엘더스T&L이 원하는 두께의 알루미늄을 만들어 냈다. 아웃소싱 업체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도전. 새로운 자키를 만드는 일은 여러모로 새로운 도전이었다. 무시무시한 쇳덩어리를 들어올리는, 더욱 더 무시무시한 쇳덩어리가 기어식 자키였다. 그런데 그 중추가 되는 기어라는 방식을 압력으로 대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압력만으로 무거운 레일을 들어올리기 위해 엘더스T&L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실험했다. 그렇게 치열한 과정 속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철도레일 보수용 유압식 잭’ 2006년, 엘더스T&L의 새로운 유압식 자키는 이 이름으로 무난히 특허출원에 성공했다. 새로운 자키의 성능은 기존의 것을 대체할 만큼 완전했고, 안전성은 압도적으로 뛰어났다.

마침내 이 제품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원하는 ‘우수발명시작품제작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엘더스T&L은 이 지원을 바탕으로 점차 매출액을 늘려가기 시작했다. 2007년 22억 원을 기록한 매출은 2009년 58억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다.

그런데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이제 자키를 작동시키면 레일이 천천히 들어 올려지고, 천천히 내려온다. 더 이상 그 밑에 깔려 자신의 몸을, 인생을 망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내는 2년 전, 문씨를 만났던 날을 기억한다. 그날 근심으로 움푹 패인 문씨의 표정은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 생생하게 틀어박혀 있었다. 사내는 앞으로 철도 보수 현장에서 만나게 될 인부들의 표정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세계로 뻗어나가며

엘더스T&L은 철도레일 보수용 유압식 잭 말고도 부러진 레일 사이를 빠른 시간 안에 이어주는 응급 이음매, 레일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 등을 개발했다. 모두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원 재료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어 훨씬 좋은 성능으로 개량해 냈다.

좁고 치열한 철도 공구 시장에서 엘더스T&L이 온전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력은 바로 끊임 없는 도전과 새로운 발상이었다. 그들은 기존의 도구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었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미래 또한, 밝고 희망적으로 바꾸었다.

지금, 엘더스T&L은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철도레일 보수용 유압식 잭은 이미 대만에 진출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용기를 얻은 그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전 세계에 소개할만한 유통망을 가진 협력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세계 각지의 철도와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엘더스T&L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다. 2011. 9 |



**IP**

**Information**


# 상표에도 ‘스테디셀러’가 있다

## 최장수 등록상표는 몇 살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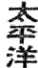







‘묵어야 장맛’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상표도 사용하면 할수록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기억되고 그 가치 또한 점점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 상표법이 시행된 1949년 이래, 특허청에 등록되어 가장 오래 살아있는 상표는 내외국인을 통틀어 토종기업인 ‘샘표식품 주식회사’의 “”로 확인되었다.

이 상표는 전통발효식품 ‘간장’ 등을 상품으로 하여 1954년 5월 10일 등록된 이후 지금까지 57년 2개월에 걸쳐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상표 가운데는, 미국 ‘펩시코 주식회사’에서 청량음료 ‘사이다’ 등을 상품으로 하여 1954년 9월 27일 등록한 “”가 56년 9개월로서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다.

한편, 술 등 기호품을 중심으로 주요 상품분야별로, 오랜 기간 존속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의 대표적인 사례를 내외국인으로 대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술은 ‘주식회사 진로’의 “”가 56년, 영국 ‘시바스 홀딩스 리미티드’의 “”이 50년,
- ② 화장품은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52년, 프랑스 ‘샤넬’의 “”이 47년,
- ③ 핸드백은 ‘주식회사 금강’의 “”이 30년, 프랑스 ‘루이비통말레피에’의 “”이 32년,
- ④ 시계는 ‘주식회사 오리엔트바이오’의 “”이 43년, 스위스 ‘라도 와치 컴파니 리미티드’의 “”가 51년,
- ⑤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가 32년, 미국 ‘크라이슬러 그룹’의 “”가 56년간 존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받는 ‘스테디 셀러’ 상표들의 특징을 보면, 상표권자가 상품의 생산 및 광고 활동 외에도, 상표관리 전담조직을 두어 상표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등록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이른바 ‘짝퉁’ 상품의 유통에 적시 대응함으로써 상표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상표권자는, ①상표를 등록받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②상표를 최근 3년간 사용한 실적이 없거나, ③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소멸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특허청(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이므로, 지속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여 호감이 가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야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축적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관련 통계자료**

● 최장수 등록상표 현황

(2011. 7. 특허청)

국적	등록번호	등록일 (보유기간)	권리자	상표	상품
내국인	362	1954. 05. 10. (57년 2개월)	샘표식품주식회사		간장
외국인 (미국)	463	1954. 09. 27. (56년 9개월)	페푸시코인 코포레이티드		사이다

● 주요 상품별 장수 등록상표 현황

(2011. 7. 특허청)

상품	국적	등록번호	등록일 (보유기간)	권리자	상표
술	내국인	457	1954. 09. 15. (56년 10개월)	주식회사 진로	
	외국인 (영국)	5075	1960. 09. 02. (50년 10개월)	서비스홀딩스 리미티드	

상품	국적	등록번호	등록일 (보유기간)	권리자	상표
화장품	내국인	3677	1959. 03. 21. (52년 4개월)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	
	외국인 (프랑스)	8779	1964. 05. 26. (47년 2개월)	샤넬	
핸드백	내국인	74374	1981. 01. 19. (30년 6개월)	주식회사 금강	
	외국인 (프랑스)	59469	1979. 01. 11. (32년 6개월)	루이비통말레띠에	
시계	내국인	14306	1967. 12. 07. (43년 7개월)	주식회사 오리엔트바이오	
	외국인 (스위스)	4570	1960. 02. 22. (51년 5개월)	라도 와이 컴퍼니 리미티드	
자동차	내국인	58023	1978. 10. 20. (32년 9개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외국인 (미국)	519	1954. 11. 30. (56년 7개월)	크라이슬러 그룹 엘엘씨	
커피	내국인	52012	1977. 12. 28. (33년 9개월)	동서식품주식회사	동서
	외국인 (미국)	13658	1967. 08. 10. (43년 11개월)	페푸시코인코포 레이티드	
담배	내국인	160930	1988. 10 18 (22년 9개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외국인 (스위스)	817	1955. 06. 03. (55년 1개월)	필립 모리스 프로덕츠 에스.에이	
여성복	내국인	11095	1966. 05. 17. (45년 2개월)	제일모직주식회사	
	외국인 (프랑스)	27682	1972. 09. 15. (38년 10개월)	잔느 랑뱅	
장신구	내국인	29861	1973. 03. 26. (38년 3개월)	주식회사 에스콰이아	
	외국인 (영국)	48902	1977. 02. 28. (34년 5개월)	하디 에이미즈 리미티드	
구두	내국인	22537	1971. 06. 19. (40년 1개월)	금강제화주식회사	
	외국인 (프랑스)	56978	1978. 08. 07. (32년 11개월)	샤넬	

제공 특허청

# 세계는 지금

## 일본 경제산업성, 전 세계 특허분류 공통화 작업 시안 정리

지난 8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하이브리드 자동차(HV)의 엔진시스템 등 일본이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의 특허분류를 포함한 새로운 국제특허분류(IPC)의 시안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특허출원건수의 80%를 차지하는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등 IP5를 중심으로 2014년 전 세계 특허분류의 표준화를 목표로 하였다.

경제산업성은 주요 국가들의 특허분류를 통일화하여 일본 기업이 각국에서 효율적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외에도 경쟁이 심화되는 산업계의 지식재산 전략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nikkan.co.jp>

## 일본 특허청, 도형상표의 거절사례 정보제공

지난 8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2009년 출원된 상표 중 도형상표에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

일 또는 유사하다는 내용의 거절 이유가 통지된 사례를 정리하여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기업과 대학 등에서 연구용 이미지 검색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업과 대학 등에서 이미지 검색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검색을 도형상표 검색에도 응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이러한 연구 성과를 특허청에 보고한 바 있고, 의견교환에서도 JPO가 도형 상표의 심사에서 어떤 것을 유사 상표로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특허청 상표과에서는 기업과 대학 등에서 이미지 검색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09년 출원된 상표 중 특히 도형상표에 대해서 거절 이유 통지 사례를 정리하였다.

출처 <http://www.jpo.go.jp>

## 일본 지식재산교육협회,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강좌 개설

지난 8월 4일, 일본 지식재산교육협회는 기업 경영에서 필요한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강좌를 개설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기업이 특허를 무기로 해외시장 개척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본 기업의 강점인 기술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경영을 빼놓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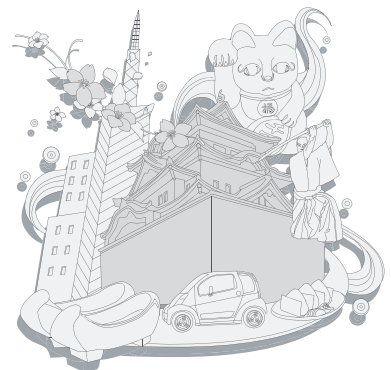
그러나 변리사 등 지식재산전문가는 특허출원 절차에 특화되어 있으며, 기업 경영진은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향이 강해 경영 현장에서 지식재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식재산과 경영의 관점에서 경영진에게 전략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영기획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 용자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진단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의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첫 강좌는 9월~11월 중 5일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출처 [mainichi.jp](http://mainichi.jp)



## 미국 상원, 특허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 예정

지난 8월 2일, 미국 상원은 특허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상원의 Harry Reid 의원은 먼저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특허개혁법안의 수정안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9월 6일에 표결을 통하여 동 법안을 다음 단계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원의 Chuck Schumer 의원은 현재 미국의 부채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동 법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백악관 대변인은 특허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몇 가지의 절차만 해결되면 대통령의 서명이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이 서명되어 발표되면 미국 특허제도는 60년 만에 큰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가장 주요한 변화는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의 변화이다.

출처 <http://www.nationaljournal.com>

## 미국 하원,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에 데이터독점권 축소를 요구하는 서한 작성

지난 8월 4일, 미국 하원 의원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의 데이터독점권 보호기간을 축소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Henry Waxman 의원은 데이터독점권 보호기간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6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현재 미국은 건강보험개혁법에 의해 바이오시밀러의 승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절차는 전통적인 의약품 승인절차보다 복잡하며 12년의 데이터독점권이 주어진다.

지난 6월 진행된 TPP 제7차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데이터독점권을 12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에 동의하였다.

서한에서 Waxman 의원은 TPP의 지식재산권 규정 안에 포함된 데이터독점권 보호기간을 7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의회가 제시한 7년의 데이터독점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12년으로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실행력이 약해질 것이 우려되며, 12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에 동의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thehill.com](http://thehill.com)

##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건수 8백만 건 돌파

지난 8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건수가 8백만 건을 돌파하였다고 발표했다. 1911년부터 허여한 특허건수가 1백만 건이 되기까지 75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7백만 건에서 8백만 건까지 약 6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8백만 번째 특허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8백만 번째를 기록한 특허는 Second Sight社의 발명품으로 외부 망막변성으로 실명한 사람들을 위해 시·지각을 강화시켜주는 시각 인공 삽입물 장치에 대한 특허이다. 이러한 혁신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USPTO는 미국의 혁신가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자본을 확보하고 기업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http://www.uspto.gov>

# 세계는 지금

##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 삼성전자 상대로 한 애플의 가처분신청 인정

지난 8월 9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최신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수입과 마케팅 활동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였다.

독일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한국을 포함,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세계 10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측 간의 소송 20여 건 가운데 처음으로 가처분신청이 인정된 판결이다.

「갤럭시탭 10.1」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패드」를 잡겠다고 내놓은 야심작이며, 삼성전자는 이달 1일부터 영국, 독일 등 서유럽에서 대대적인 출시 이벤트를 벌이던 중이었으나, 법원의 재심까지 4주가량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그동안은 판매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미국,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이미 호주에서도 애플이 특허침해소송을 내면서 「갤럭시탭 10.1」 출시 일정이 유보된 상태이다.

## 영국 지식재산청, 정부의 지식재산법 개정 결정 발표

지난 8월 3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 정부가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UKIPO로부터 의뢰받아 Cardiff 대학 Ian Hargreaves 교수가 독립적으로 연구하여 지난 5월에 발표한 「디지털 기회: 지식재산과 성장에 관한 검토」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수락한 결과이다.

영국 정부가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식재산권법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설치) 콘텐츠 관련 라이선스를 온라인에서 체결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즉 디지털 저작권거래소를 설치함
- (개인용 단말기 관련 사적복제 허용) 합법적으로 구입한 콘텐츠를 CD나 컴퓨터 또는 iPod과 같은 휴대장치로 옮기는 것을 합법화함
- (패러디에 대한 저작권 제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패러디 할 수 있게 하여 영국의 생산업체와 코미디언 같은 실연가들이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제작하고 실연할 수 있

도록 함

-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제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으로 알려진 기술 검색 및 분석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함. 현재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분야 연구자 및 과학자 등이 데이터 관련 작업을 하는 것에 지장이 있음
- (작자 미확인 저작물의 라이선싱) 작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싱 및 허락절차를 마련할 것임
- (증거 기반 미래정책 수립) 정부는 증거를 기반으로 미래정책을 수립할 것임. 정부는 성장의 기회를 연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이미 한 개의 보고서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투자하는 금액이 연간 650억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국가지식산업국, 2011년 상반기 기업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공개

지난 8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업국(SIPO)은 2011년 상반기 중국기업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을 공개하였다.

전체 특허출원건수는 전년대비 59.1% 증가한 약 31만 건으로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의장특허 등이 각각 45.7%, 62%, 69.7% 증가했다.

중국기업의 발명특허 출원 및 등록 순위는 다음과 같다.

출원 순위	기업명
1	중싱(中兴)
2	화웨이(华为)
3	시노펙(中石化)
4	하이양왕(海洋王)
5	텐센트(QQ)
6	촨다(创达)기술거래시장
7	코디(Coddy)
8	중국석유(CNPC)
9	비야디(BYD)
10	화웨이 종두안(终端分期)

등록 순위	기업명
1	중싱(中兴)
2	화웨이(华为)
3	시노펙(中石化)
4	비야디(BYD)
5	H3C(华三通信)
6	DT모바일(大唐移动)
7	SMIC(中芯国际)
8	체리 자동차(奇瑞汽车)
9	인벡(英业达)
10	바이오스틸(宝山钢铁)

중싱사는 2010년 2,434건의 발명특허를 등록하여 2위를 차지하였으나 현재 1,692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화웨이사는 2010년 2,776건의 발명특허를 등록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나 현재 1,498건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지식재산권과 리순더(李顺德) 주임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기업들의 특허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발명특허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http://www.sipo.gov.cn>

## 중국 중앙인민정부, 「중국 산업기업 브랜드 건설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 공개

지난 8월 2일, 중국 중앙인민정부(中央人民政府)는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국가개발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등이 포함된 7개의 부처가 공동으로 작성한 「중국 산업기업 브랜드 건설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을 공개하였다.

지도 의견은 2015년까지 중국기업들의 혁신능력과 브랜드 육성능력을 강화하고 각 기업들의 브랜드 전략을 제정 및 실시하게 하며,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브랜드 육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출처 <http://www.gov.cn>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 KIPO NEWS

## 특허청, 국가 R&D 연구단에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제시

최근 국립대 법인화 등의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 스스로 차세대 먹거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특허청은 국가 R&D 연구단에 특허전략전문가\*를 파견하여 대학의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R&D 수행 모델을 제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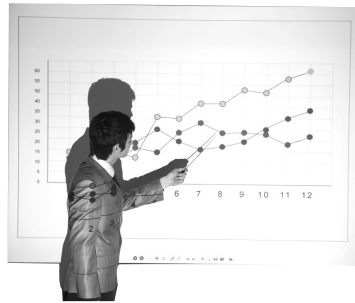
\* (특허전략전문가) 변리사, 대기업 연구원 및 기업 특허부서장 출신으로 R&D 경력과 IP(지식재산) 경력을 동시에 보유한 전문가

이수원 특허청장과 하우송 경상대 총장은 지난 8월 2일 경상대학교(경남 진주 소재)에서 대학 연구단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제시를 위한 국가 R&D 특허전략전문가 파견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경상대 나노구조 생체에너지 융합연구단에 특허전략전문가가 파견되어 연구개발 시작단계부터 연구결과의 사업화까지 특허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지원하여, 전략적 기술이전을 통한 고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대학의 R&D 수행 모델 발표 및 향후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대학에 특성화

된 특허전략 지원을 통해 국제원천특허창출 등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발표회가 대학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이 확산 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서울대, 국내 대학 중 디자인권 최다 보유

국내 대학 중 디자인 권리화에 가장 적극적인 대학은 서울대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서대학교, 공주대학교가 뒤를 이었다.

이는 특허청이 대학 법인의 디자인권 등록 및 최근 5년('06~'10년)간 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다.

서울대는 139건의 디자인권을 보유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한서대와 공주대는 각각 115건, 88건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5년('06~'10년) 서울대는 113건의 디자인을 출원하였고 한서대와 공주대는 각각 112건과 109건의 디자인을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자인에 강한 대학으로 알려진 국민대와 홍익대는 각각 30건과 19건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디자인 출원은 각각 56건, 37건이었다.

## 찾아가는 전자출원 교육, 중소기업에 인기 급상승!

특허청이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자출

디자인 다등록 대학 현황(2010년말 기준) (소멸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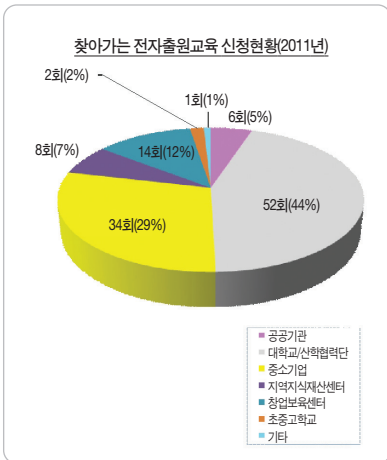
대학별	서울대	한서대	공주대	서울여대	원광대	강원대	군산대	한국산업기술대	경상대	국민대
등록건수	139	115	88	58	54	54	36	33	35	30

홍익대 19건

디자인 다출원 대학 현황(2006~2010) => 5년간 출원 합산임

년도\대학	서울대	한서대	공주대	청주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원광대	한국산업기술대	국민대
출원건수	113	112	109	81	72	70	70	50	56

홍익대 37건



원 교육서비스가 중소기업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하반기 교육 수요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교육신청은 지난해 대비 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07년부터 중소기업, 대학 등의 특허출원 능력과 특허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 왔다.

그동안 서울지역은 물론 지방소재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 등 누구라도 요청하면 어디든지 방문하여 총 300회 이상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에서는 업무시간외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기관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추가 수업을 파악하여 9월부터 야간과 주말에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사회적 기업에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한다

특허청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일 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사회적 기업”<sup>1)</sup> 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매출 증대와 판로확대를 위하여 브랜드 및 디자인의 개발과 권리화지원에 나서기로 하였다.

2011년 6월말 현재 고용노동부에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532개, 예비 사회적 기업은 1,005개에 이른다. 이 중 사회적 기업 5곳을 선발하여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브랜드·디자인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매출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임직원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식재산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특허청에서 지정한 지식재산 종합지원기관인 전국 32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브랜드·디자인뿐만 아니라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전문상담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리화, 사업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지원규모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 중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

# KIPO NEWS

## 국제특허분쟁 예측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한 눈에

기업이 자사의 국제특허분쟁 연구 가능성 및 대응방향을 알 수 있는 정보 검색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근 스마트폰, LED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특허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특허청은 기업 맞춤형 국제특허분쟁 정보 검색서비스를(이하, 분쟁정보 내비게이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금년 10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제특허분쟁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은 분쟁 관련 정보 부족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특허청은 기업의 분쟁 예측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분쟁으로 인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정보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게 되었다.

분쟁정보 내비게이션은 국제특허분쟁 예측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한다. 즉, 기업이 자사 제품, 진출 국가, 관련 특허 등 자사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쟁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 < 주요 제공 정보 >

- ① 분쟁동향 · 특허관리회사(NPE) 활동현황 · 소송사례 분석자료
- ② 해외 지재권 관련 제도 및 해외 진출기업 피해 · 대응 사례
- ③ 해외 지재권 전문가 현황
- ④ 주요 이슈 심층분석 보고서 등

특히 시스템에 위키(wiki) 개념을 도입하여 오류가 있거나 보강이 필요한 콘텐츠는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검색으로써 분쟁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정보탐색비용 절감 및 분쟁 대비능력 향상이 기대된다.

구분	내용
입력정보	· 업종(자동차 부품, 의류, 전자 등) · 진출형태(수출, 위탁생산, 법인설립, R&D 센터 설립) · 진출국가(미국, 중국, EU 등)를 입력
출력정보	· 입력조건에 가장 부합한 분쟁 현황, 판례, 법령정보, 대응방안 등

제공 특허청

### [ 수출기업 지재권 분쟁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요 ]



# KIPA NEWS



## 우리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U** 리회(부회장 최종협)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이원영)과 지난 8월 30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회의실에서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과학기술 영재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경기도 기업, 대학, 연구소 대상 특허기술평가·거래 및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 확산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경기도 산학연을 연계·활용하는 과학교육·발명진흥 신규 프로그램 기획,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 교류 및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이 지난해 10월 특허지원 프로그램 설명회(경기과기원 주관)와 우수발명품 전시회 및 발명과학교실을 공동추진하며 보다 적극적인 업무협력 필요성을 인식한 데서 비롯됐다.

최종협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의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두 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며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지식재산권의 대국민 인식 제고는 물론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원로 발명인 간담회 개최

대한민국 발명계를 이끈 원로 발명인들 한자리에 모여



**U** 리회는 지난 8월 31일, 역삼동에 위치한 중식당 루안에서 「원로 발명인 간담회」를 열었다.

원로 발명인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변경삼·신석균·원인호·서건희·하상남·최진순·박인호·정선영 등 대한민국 발명계를 이끈 원로 발명인 24명이 참석했다.

원로 발명인들은 대한민국 발명계의 발전방안 및 우리회의 발명진흥 정책 수립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원인호 한국발명원장은 "이 모임은 발명사 증인들의 모임입니다"며 이 자리를 마련한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에 박수를 전했고, 신석균 한국신발명연구소장은 "원로 발명인들이 발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며 당부를 전했다.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은 "원로 발명인 여러분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 대한민국 발명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발명계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더욱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KIPA NEWS



## 우리회 · 미국 특허청, 지식재산권 교육 상호협력 MOU 체결

미국 특허청과 우리회가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교육분야 등에 협력키로 했다.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은 지난 8월 11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 특허청을 방문하여 앨버트 트램포시 대외협력실장을 만나, 지식재산권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상호 정보 교환 및 공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협력 MOU에 서명하였다.

이 자리에는 제임스 하우셀 미국 특허청 연수원장, 권규우 주미한국대사관 특허관, 이택수 LRK 특허 로펌 대표, 우리회 한정무 교육기획팀장 등이 함께 자리하였다.

## 도전! 대한민국 창의력 챔피언!

시·도 예선대회를 통과한  
초·중·고등학교 100개 팀 참가



우리회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11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본선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허청과 삼성전자가 공동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시·도 예선대회를 통과한 초·중·고등학교 100개 팀(7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 분야별 대상 수상자로는 도전과제 1분야에 고등부 'ARK7' 팀(서울 지역연합), 중등부 '아이다운' 팀(서울 지역연합), 초등부 '한솔' 팀(제주지역 연합)이 선정됐다.

또 도전과제 2분야에는 고등부 'OK! Babe' 팀(경기 지역연합), 중등부 '스' 팀(전북 지역연합), 초등부 '오아시스' 팀(경기 지역연합)이, 도전과제 3분야에는 고등부 '끄레아레' 팀(경기 성남서고), 중등부 'Brain' 팀(대구 지역연합), 초등부 '무한소수' 팀(부산 지역연합)이 선정됐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는 민간 부문의 수요에 맞춘 창의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왔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 제1기 최고 지식재산 경영자 과정 'CIPO Academy' 성황리 개최

우리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지난 3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5개월간 '제1기 최고 지식재산 경영자 과정(CIPO Academy : 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 Academy)' 을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지난 8월 26일에는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제1기 CIPO Academy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과정은 국회의원, 정부부처 고위공무원(판사 등), 대기업 임원(삼성전자, LG전자, KT 등), 중소기업 대표(샬롬엔지니어링, 영국전자 등), 변호사 및 변리사, 기타 국책연구소 등 37명의 수강생들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분야별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하여 IP 현안에 대한 전략적 시각을 제공하는 등 교육생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종협 부회장은 "이번 과정이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줄 아는 지식재산 경영자 확보 등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회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2011년도 9월부터 제2기 CIPO Academy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과정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교육기획팀, 02-3459-2767, yongji@kipa.org)

## 2011 대학 교수 여름 T3 (Teaching the Teachers) 개최

전국 75명 교수들(35개 대학)  
높은 학구열 보여



우리회는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컨벤션스타호텔에서 『2011 대학 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T3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75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이번 T3 프로그램은 교육과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T3 프로그램은, 전국 대학 교수들의 특허역량 강화와 중장기적 대학별 지식재산 강좌의 자립화를 위해, 우리회에서 2008년부터 운영해온 교수 대상 지식재산 교육 과정이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T3 프로그램은 특허정보조사·분석 과정 및 강한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작성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이론 수업에서 탈피하여 사례와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 교수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허청 우종균 국장은 참여 교수들에게, T3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미래 지식 산업의 주역인 훌륭한 인재 양성에 힘써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우리회는 10월 중, 지식재산 사례연구 과정 및 특허기술 가치평가 과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12월 중, 대학에서 지식 재산을 강의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지식 재산 마스터 과정(IP 교수법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 # Gunsan 전라북도



#### 군산찰쌀보리쌀

찰쌀보리쌀은 색깔이 희고 고르며, 차진성분이 강해 맛이 좋고 바닷가에서 재배되어 바다에 포함된 미량원소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영양가가 높다.

군산찰쌀보리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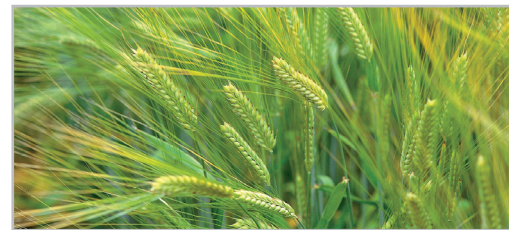
| 상표명 |  
군산찰쌀보리쌀

| 권리자 |  
사단법인군산흰쌀 보리생산자협회

| 등록번호 |  
제 24호

| 상품분류 |  
제 30류 찰쌀보리쌀(탈곡한 것)

연락처  
사단법인군산흰쌀 보리생산자협회  
063-451-2558



#### 1/ 유래

군산은 평균온도 5℃ 내외로 보리의 등숙기간이 길어 이삭이 잘 여물 수 있는 기후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 우수한 품질의 찰쌀보리쌀을 생산할 수 있었다. 군산찰쌀보리쌀은 오래전부터 그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조선시대에는 임금님 진상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 2/ 특성

군산찰쌀보리쌀은 색깔이 희고 고르며, 찰성이 강하고, 탄수화물, 식이섬유, 칼슘, 철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찰쌀보리쌀이다. 찰쌀보리쌀은 물을 빨리 흡수하고 잘 퍼져 따로 삶지 않고 쌀과 섞어 밥을 지을 수 있어 간단하며, 밥이 윤기가 있고 차지며 촉촉한 감이 나므로 밥맛이 매우 좋아서 한번 먹어본 사람은 계속 찰쌀보리를 선호하게 된다.

# # Jeju 제주도



## 제주돼지고기

우수한 종돈통일, 사료통일, 철저한 사양관리  
통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맛을 관리하여 육질이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하여 맛이 담백하고 고소하  
다. 또한, 내륙지방 고기보다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콜레스테롤 걱정이 없다.



| 상표명 |  
제주돼지고기

| 권리자 |  
사단법인 제주도수출육가공협의회

| 등록번호 |  
제 22호

| 상품분류 |  
제 29류 돼지고기

**연락처**  
사단법인 제주도수출육가공협의회  
064-794-6105

### 1/ 유래

제주 돼지는 3세기 고려시대에 원나라에서 말, 소 등 다른 가축과 함께 제주도에 도입되면서 사육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제주 재래돼지는 '흑돼지'로 무게 20~50kg 정도로 작으며 농가에서 퇴비생산과 경조사에 손님 접대용으로 사육되었다. 1960년 성 이시돌 목장에 외국산 개량돼지가 수입되면서 하얀색의 돼지를 처음으로 제주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집단사육이 시초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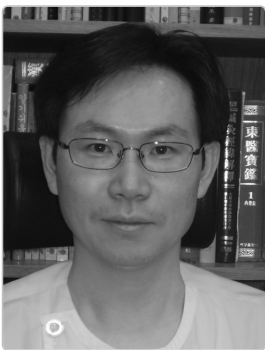
### 2/ 특성

제주도는 무공해 청정지역으로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초원을 상징하는 제주만의 축산물 안전생산 관리체계(HACCP-FCG)를 구축하였고, 국제수역사무국규정에 의한 방역결과 돼지콜레라와 오제스키병 발생이 없는 청정 지역임이 국제적으로 입증되었다.



## 해독요법과 해독다이어트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체내 해독능력을 높이며 면역력을 증강시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누리보자



이 태 원  
천안 태종한의원 원장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TV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건강프로그램으로 장수하고 있는 이유는 웰빙(well-being)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개개인의 건강까지 담보해 줄 수 없으며, 의사가 개개인의 건강을 전부 지켜줄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기도 하다.

이 웰빙이라는 신조어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먹거리에 대한 불신도 내포되어 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약품을 사용한 불량식품에 대한 충격적인 뉴스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짜 계란까지 만든다니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오히려 합법적인 식품 첨가물이나 정제된 합성물질(백설탕, 정제소금, 트랜스지방) 등의 남용이 건강을 더 위협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의 대부분에 식품첨가물이나 화학물질이 들어있지만 섭취하는 식품에 유해한 성분이 얼마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 그 성분이 어떻게 인체에 유해한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잘 먹고 잘사는 것'이 먹거리 걱정 없이 풍요로운 식단을 마음껏 먹는 것이었다면 웰빙(well-being)이라는 말에는 버릴 것은 버리고 가려서 먹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모두 함축되어 있다.

게다가 요즘은 설탕이나 소금과 같은 음식중독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 소금이 많이 들어간 짠 음식, 지방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미각을 강하게 자극하



여 뇌의 쾌락중추를 자극하는 강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음식들은 중독성이 강하여 음식섭취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점점 더 많이 먹게 된다.

설탕 같은 정제된 합성물질이 들어간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면 비만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며 체내 독소의 축적을 촉진시킨다.

또한 약물이나 식품첨가물, 정제된 합성물질을 반복적으로 과다 섭취

하면 소화효소가 빨리 소진되어 섭취한 음식물의 소화흡수가 불완전하게 되고 위장관내에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장내에서 이상발효되어 부패하게 되고 장내 유해균의 증식은 빨라지며 이상발효과정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는 혈관으로 흡수되어 독성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독소가 체내에 많아지면 만성피로, 만성염증(비염, 인후염, 기관지염, 피부염, 관절염), 알러지질환(비염, 피부염, 결막염, 천식), 만성소화불량, 과민성대장증후군, 만성통증(근육통, 생리통, 두통) 등을 유발한다.

혈액검사상, 소변검사상 특이적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을 체질적인 병증으로 간과하기 쉽고 치료하기 보다는 증상만 완화시키는 대증요법만 받다가 결국 병을 키울 수도 있다.

**해독요법은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을 정화하여 치료하는 치료법**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해독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본래 인체에 들어온 독성물질은 간에서 대사되어 소변, 대변, 호흡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배출된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에 따라 화학물질(약물, 식품첨가물, 살충제, 방부제, 화학비료, 세제)이 증가하고 각종 중금속은 물론, 술이나 담배, 카페인 등의 독성물질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인체의 해독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러한 독성물질이 체내에 쌓이면 면역기능과 호르몬기능이 저하되고 체내 효소가 고갈되어 해독능력을 상실하므로 심혈관계 및 신경계가 파괴되어 성인병, 암과 같은 난치병을 유발한다.

간에서는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며 해독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정화시켜 배출시키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결국 일상적인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나 에너지가 독소를 해독하는데 소진되고 이로 인해 대사율이 크게 떨어져서 결국 비만을 유발한다.

이러한 체내에 쌓인 독성물질과 노폐물을 배출시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이 해독요법이다.

해독방법에는 단식이나 장해독 등을 통하여 대소변으로 노폐물을 단시간에 배출시키는 거시적인 해독요법도 있지만 체내 항산화효소를 활성화시키고 간의 해독능력을 극대화시켜 독소를 빠르게 정화하는 미시적인 해독요법도 있다.

소화기관이나 혈관 내부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체액, 혈액, 림프액 등을 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독방법이라면, 효소해독법(Enzyme detox)이란 체내 항산화효소를 활성화시켜 대사과정에서 발생한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폐물 축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항산화물질을 영양공급하여 간의 해독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영양요법이다.

효과적인 해독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해독법과 효소해독법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장해독은 장관내의 노폐물을 단기간에 배출시켜 장내의 유해균과 유독가스를 제거하는 해독방법이고, 간해독요법은 담낭과 담관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같은 침전물을 소장으로 배출시켜 간기능을 회복하고 담관을 정화하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장 해독과정에서 장내 유익균도 같이 씻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장이 과민한 사람은 유해균의 증식이 쉬워져서 만성적인 설사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간해독은 해독과정에서 담즙뿐만 아니라 다량의 효소도 같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간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장해독과 간해독요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시행해야 하며 일시적인 정화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인 해독능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남용해서는 안된다.

지속적으로 해독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습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미네랄이 함유된 물을 섭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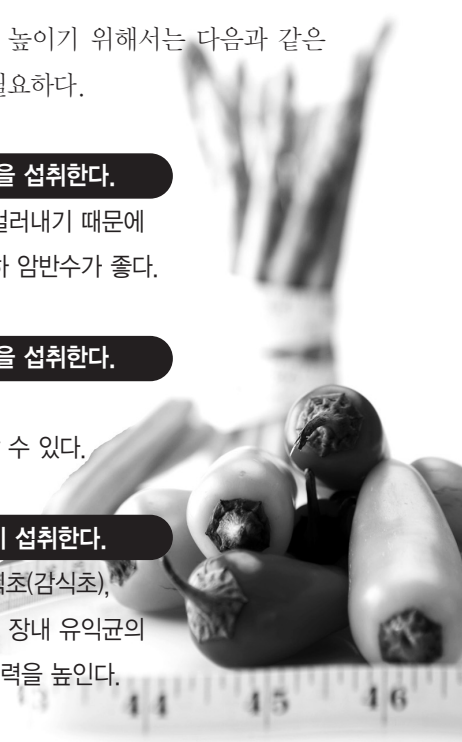
정수된 물은 미네랄까지 걸러내기 때문에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지하 암반수가 좋다.

**둘째,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한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천연효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셋째, 발효효소식품을 많이 섭취한다.**

김치, 된장, 청국장, 발효식초(감식초),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주고 항산화능력을 높인다.



**넷째, 도정하지 않은 발아현미를 섭취한다.**

효소, 단백질, 섬유질의 훌륭한 공급원이 된다.

**다섯째, 콩을 충분히 먹는다.**

콩에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으며 특히 검은콩은 해독작용이 뛰어나다.



**여섯째, 설탕, 소금, 동물성 지방, 트랜스 지방의 섭취를 줄인다.**

한의학에서는 담음(가래처럼 끈적거리는 노폐물)이나 어혈(혈액순환장애로 유발된 끈적이는 혈액) 같은 노폐물을 질병을 유발하는 독소로 인식하였으며 담음과 어혈이 적취(積聚 - 암과 같은 병적인 조직 덩어리)와 같은 난치병을 유발하는 유발인자로 인식하였다.

해독다이어트는 다이어트한약을 이용한 해독요법과 효소한약을 이용한 식이요법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정화하여 요요를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다이어트한약은

체지방을 분해, 배출시키고 담음과 어혈 같은 노폐물을 정화하며, 효소한약은 항산화물질을 공급하고 항산화효소를 활성화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체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인체는 스스로 체내 독소를 해독정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오염된 환경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방식 때문에 체내 독소가 증가되어 만성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체내 해독능력을 높이며 면역력을 증강시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누리보자. 2011. 9 |



#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지식재산권 용어설명

### written argument/opinion

출원인이 심사관의 보정명령서, 거절이유제출 통지서 등에 대해 반복 또는 답변을 기술한 문서. An examiner who intends to refuse an application for supplementary registration of designated goods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asons for the refusal and give the applicant an opportunity to submit a written statement of arguments within a designated period.(심사관은 지정 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workshop modification

관용기술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이미 알려져 있는 기능, 효과와 비교하여 우수한 것을 가져 올 수 없는 구성의 변경. 관용기술의 구체적인 적요에 수반되는 설계변경은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이 발휘되는 것으로서, 인용발명과의 차이점이 단지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그 발명은 진보성을 갖고 있지 않음.

### work of architecture

실제의 건축물은 물론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work of applied art

수공예품이나 산업적으로 제작된 저작물과 같이 실용성이 있는 물건에 응용하기 위한 미술저작물. 이는 디자인보호법과의 보호관계가 중첩되나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일품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예정하고 있음.

### word mark

상표법은 상표의 구성요소로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혹은 이것들과 색체의 결합을 예정하고 있음.(상표법 제2조 제1항) 이 중 문자만을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를 말하며, 문자상표의 유사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중요한 판단기준임.

# 특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Q.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A. 출원인코드신청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출원신청사전절차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http://www.kipo.go.kr)) 중앙하단에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서식에서 출원인 코드 부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원인코드신청은 수수료가 없으며, 한번만 부여 받으면 향후 모든 특허절차를 수행할 때에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인적사항 기재 : 내국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법인 및 외국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인감란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적정보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 만약 이 경우 출원인코드부여통지서를 부여받고 그 즉시 발견한 경우에는 접수담당자에게 가서 수정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적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시의 인감에 대하여는 출원인의 아무 도장이나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등록된(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날인한) 인감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시에 개인은 인감과 서명 등록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등록된(출원인코드부여신청 시 날인한) 인감 또는 서명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Q. 출원 시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A.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대리인(변리사)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특허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받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임을 고려하여 본인이 작성하기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없을 때는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한 이후에 중간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출원,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 시에 출원서,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간위임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인선임 신고를 해야만 출원에 대한 일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에서는 대전본청 고객서비스과와 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에 민원상담관을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출원절차 등 특허행정분야에 관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지방에도 상공회의소 내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여 출원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니, 향후 산업재산권 절차진행 등과 관련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책과의 만남

## 창업국가

### 21세기 이스라엘 경제성장의 비밀

#### 경제 성장의 새로운 화두, 이스라엘의 성공 노하우!

21세기 이스라엘 경제 성장의 비밀과 성공 노하우를 분석한 책 『창업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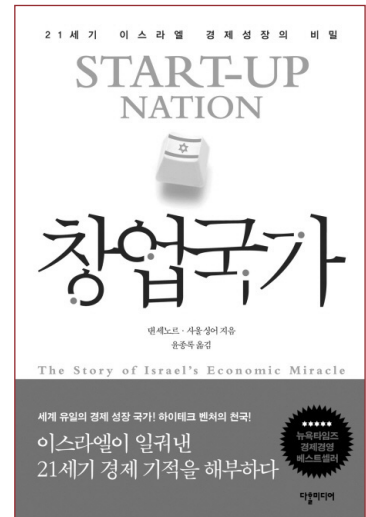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과 혁신적인 벤처창업, 과학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생산적인 군대 시스템을 선보이며 '21세기형 선진국'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선 이스라엘. 두 저자는 100여 명의 미국 및 이스라엘 정치인, 기업인, 군인, 일반인 등과의 심층 인터뷰와 경제학 및 사회문화적 분석을 통해 이스라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파헤친다. 이스라엘처럼 인적자원을 중시하고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한 우리나라 경제에 다양한 시사점을 던지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저자 댄 세노르 (Dan Senor)

미 정부 외교자문위에서 중동지역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지역의 정치,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자문을 해오고 있다. 특히 이라크에 가장 오랜 기간 머문 미국 관리로 인정받아 국방성으로부터 최고 명예 훈장을 받았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을 졸업했으며 주로 아랍세계를 여행했다. 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벤처기업에 투자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뉴욕에 거점을 둔 글로벌 벤처 투자 펀드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의 투자 분석 자료는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위클리 스탠다드> 그리고 <타임> 등에 자주 인용되고 있다. 현재 뉴욕에서 두 아들과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 저자 사울 싱어 (Saul Singer)

<예루살렘 포스트>의 사설을 맡았고 현재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 <코멘터리>, <모먼트>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인터넷서널 블로그 등에도 기고하고 있다. 역사학자 마이클 오렌은 그의 책 《지하드의 등장-이스라엘의 고난과 9/11 이후의 세계》를 중동 전문가나 비전문가 모두 꼭 읽어야 할 책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1994년 이스라엘로 이주하기 전까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와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자문 역을 맡아 일해 왔다. 현재는 예루살렘에서 부인과 세 딸과 함께 살고 있다. 두 저자의 웹사이트는 [www.startupnationbook.com](http://www.startupnationbook.com)이다.



저자\_댄 세노르, 사울 싱어  
역자\_윤종록  
출판사\_다함미디어

## 뮤지컬

# 셜록홈즈

2011. 8. 6 ~ 9. 25

###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셜록홈즈>가 국내 최초 뮤지컬로 탄생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정이 돌아오다  
한 여자의 실종, 세 명의 의뢰인,  
완벽한 거짓은 완벽해 보이는 진실 뒤에 숨어 있다.

19세기 말, 런던... 크리스마스 이브  
영국 최고의 가문인 앤더슨가의 대저택에서 두 방의 총성이 울려 퍼진다.

저택에 머문 인물은 앤더슨가의 유일한 상속자 아담 앤더슨과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쌍둥이 동생 에릭 앤더슨  
그리고... 아담과 에릭, 두 사람이 함께 사랑한 아담의 약혼녀 루시존슨.

그로부터 보름 후,  
앤더슨가의 2인자이자 아담과 에릭 형제의 숙부인  
포비 앤더슨이 셜록홈즈를 찾아와 의뢰한다.

“루시존슨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  
아담과 에릭 두 사람 역시 홈즈에게 각각 루시존슨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한다.  
거액의 사례비와 함께.

단순 실종사건이 아님을 직감한 홈즈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앤더슨가 주변의 인물들이  
한 명씩 살해당하기 시작하는데...



공연장소 : 대학로 문화공간 이다 1관  
공연기간 : 2011. 8. 6 ~ 2011. 9. 25  
출 연 : 김원준, 송용진, 구민진, 방진의,  
정명은, 배다해, 박인배 등  
관람시간 : 150분(인터미션 : 15분)

## 전시

#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1. 8. 12 ~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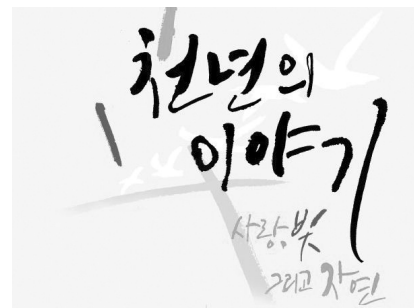
### “신라 천년 이야기, 세계문화와 접목”

신라문화의 고유성과 세계문화의 다양성이 만나는 소통과 융합의 장 경주세계  
문화엑스포가 천년 신라의 깊은 뿌리(천년의 이야기)를 간직한 경주에서 여섯  
번째 문화적 접목을 시도한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Gyeongju  
World Culture EXPO 2011)'의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제6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인 이번 엑스포는 8월12일~10월10일(60일간) '천  
년의 이야기-사랑, 빛 그리고 자연'(The Story of Millennium - Love,  
Light and Nature)을 주제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과 경주시 일원에서 펼  
쳐진다.

행사의 주제는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천년 신라인의 꿈을 바탕으  
로 미래 천년의 이야기를 상상하고, 천년 역사를 간직한 신라 고도의 숨결과,  
새롭게 시작될 경주의 미래를 경주엑스포를 통해 표현하고자 '천년의 이야기'  
로 정했다. 부제는 '사랑, 빛, 그리고 자연'이다.



공연장소 : 경주보문단지 엑스포 행사장  
공연기간 : 2011. 8. 12 ~ 2011. 10. 10  
기 획 사 : (재)문화엑스포

# 발명 365

어떻게 이런 일이...



## 청진기

의사라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청진기로 환자를 진찰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의료기구이다. 청진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라에네크.

그는 1781년,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서 태어났다. 후에 전문 병리학자가 된 그는 35세 때 프랑스 루브르 궁의 안 뜰을 산책하다가 아이들이 긴 막대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은 나무 막대를 서로의 귀에 대고 재잘거리며 웃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유심히 바라보던 라에네크의 머리 속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옳지, 저런 식으로 심장의 소리도 들을 수 있지 모르겠다!’

그는 자신의 진찰실에서 종이를 말아 여러 가지로 실험을 시작했다. 종이를 말아 묶어 통 모양으로 만든 다음 그것을 환자의 심장에 대보았는데 이것이 청진기를 사용한 최초의 청음진찰이었다.



## 체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 중에 구동체인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체인에 대한 세계 최초의 고안이다. 체인을 사용한 구동시스템에서는 1588년 경 라멜 리가 지은 「여러 가지의 기계」라는 책에 육지로 끌어올리는 기계에 이용되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 있다.

1864년 제임스 슬레이터는 자전거 등을 구동할 수 있을 만한 강하고도 정밀한 체인의 특허를 취득했다. 샬포드에 있었던 그의 공장에서는 그때까지 직물 기계용의 체인을 만들고 있었는데 스위스의 한스 레놀츠가 이것을 매수하여 1880년에는 부슈롤러식 체인의 특허를 취득했다. 구동체인은 널리 쓰이지 못하다가 산업혁명의 결과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1868년 프랑스에서 뒷바퀴를 체인으로 구동하는 최초의 자전거가 앙드레 기르메에 의해 탄생되었다.

**독자마당**

발명특허를 보신 후 가장 좋았던 내용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적어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더 나은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면에 게재되신 분에게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독자의견을 적어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추천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서)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보내실 곳  
eldaah7@kipa.org

**QUIZ**

1. 1992년 8월 11일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은?
2. 1898년 8월 10일, 이종일에 의해 창간되었으며, 순 국문 판으로 발행되어 1910년 일본에게 강제 폐간될 때까지 자주독립사상을 고취시킨 신문은?
3.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는?

※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천을 통해 「발명특허」 추천도서에 소개된 책을 덱으로 보내드립니다.

**PUZZIE**

8월호 정답

정	인		개	권	유	익
	용	해	도		행	
대			국		어	구
방	갈	로		태		수
	이		감	보		회
조	천	고	창		진	의
	정		사	마	천	



1

2

3

#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E-mail) : eldaah7@kipa.org

## 회원 동정 접수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 A4(1/2매, 글자크기 :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 eldaah7@kipa.org



##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전략기획팀 TEL (02)3459-2726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확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편집 : 전략기획팀 김민국 (Tel. 02-3459-2726, Fax. 02-3459-2729)

# 제9회 발명장학생 선발 안내



접수기간 · 2011년 8월 22일(월) ~ 9월 16일(금)

- **목적** | 우수 발명활동을 한 학생들에게 교육적 보상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발명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 **주최·주관**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선발대상**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고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연령(11세~19세)에 해당하는 자
- **접수방법** | [www.kipa.org](http://www.kipa.org) 로그인 후 신청서 및 첨부자료 등기우편(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선발절차** |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선발캠프
- **지원내용** | 선발증서 및 메달, 창의발명캠프 제공(참가비 무료, 3박 4일), 사회적배려계층 금전적 지원
- **유의사항** | 학교당 5명 지원 가능, 지역별 균형선발제도 도입(홈페이지 참조)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T.02-3459-2749)



“아이디어가 선풍타격기  
되어 드립니다.”



기업과 종업원의 win-win.

# 직무발명제도

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 ▶ 직무발명제도란?

-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 기업은 직무발명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나요?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유발하고, 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와 기술 축적 및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 ▶ 직무발명제도는 어떻게 도입 하나요?

-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을 기업과 종업원이 합의 하여 기업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정하면 됩니다.

##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직무발명 도입기업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찾아가는 직무발명 제도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직무발명제도 열람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http://www.kipo.go.kr))의 특허마당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http://www.kipa.org))의 사업안내

## ■ 직무발명제도 관련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37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5